#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 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백 옥 선


#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br> - 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백 옥 선

# -국가표준기본볍 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br> - 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br>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br>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br> - Centered on Regulations Regarding Product Certification and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e Accreditation - 

연구자 : 백옥선(부연구위원)<br>Baek, Ok-Sun

2015. 11. 15. 

## 요 약 문

## I．배경 및 목적

$\square$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선진화 및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제정 된 지 15 년이 경과한 법률임

○ 「국가표준기본법」은 최근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법률임은 물론，규제개혁의 핵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험•검사•인증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 는 점에서「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필요함

○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특 수성을 검토하여 기본법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square$ 입법평가 방법 및 대상

○ 기본법의 특성 및 유형을 분류하고，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기본법의 사후적 입법평가에 필요한 입법평가방법을 도출하도록 함

○ 「국가표준기본법」전체에 대한 입법평가가 아니라，기본법 내에 포함된 규정 중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조항 일부를 평가하도 록 함

## ․ 주요 내용

$\square$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제시
○ 기본법 형식으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사후적 입법평 가의 방법론 적용상의 한계 논의

○ 기본법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향설정
○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준 논의
$\square$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국가표준기본법」전체가 아니라 법률의 내용 중 적합성평가시 스템과 관련된 조항만 평가하도록 함

○ 제품인증등의 제도도입시 통보•협의에 관해 정하고 있는「국 가표준기본법」상 제품인증등 관련 조항（제22조）과 신제품 인증 （제22조의3）조항에 대한 입법평가

○ 적합성평가체제의 핵심인 국가인정체계와 관련된 시험•검사기 관 인정조항（제 21 조，제 23 조）에 대한 입법평가
$\square$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대 안 제시

## III．기대 효과

$\square$ 입법평가 사례연구로서 기본법 형식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 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목적의 하나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관련 입법과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주제어 : 표준, 적합성평가, 인정, 인증, 입범평가, 기본범

## Abstract

## I．Backgrounds and Purposes

$\square$ Need and purpose of legislative evaluation

O The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constituted with the pur－ pose of the advancement of nationwide conformity assessment sys－ tems and the consolidation of competitive power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es，is a 15 year old legislation．

O There is a need for a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for the ${ }^{\ulcorner } \mathrm{Na}$－ 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as it is a legislation directly rele－ vant to the recent objective for the consolidation of competitive power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es，and also is a foundation to test • inspection $\cdot$ accreditation system that is being reviewed as key to regulatory reform．

O In addition，as the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is structured as a framework act，through its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a stan－ dard can be devis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distinct charac－ teristics of the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framework acts．Method and subjects of legislative evaluation

O Categorize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framework act，review existing discussion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extract legis－
lation evaluation methods required by the ex－post legislative eva－ luation of framework act

O Not a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as a whole，but an evaluation of certain articles relevant to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from the regulations within the framework act

## П．Major Content

Proposal of criteria and methods for Ex－Post Legislative Eva－ luation of the Framework ActO Discussions on the limitations of applying general methods for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ct

O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s directed based on and following a type analysis of the framework act

O Discussions regarding the criteria for the ex－post legislative eva－ luation of the framework actLegislative evaluation of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O Evaluation of articles related to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not the entire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O Legislative Evaluation on Product Certification and etc．（Article 22， Article 22－3，Article 25－2）

O Legislative Evalua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e Accredita－ tion（Article 21，Article 23）
$\square$ Legislative Propositions for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 based on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results

## II．Expected Effects

As a case study of legislative evaluation，it can be used a basic data for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framework actsThrough the process of Legislative Evaluation of 「National Standard Framework Act」，it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t establishment of a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and procure a systemization of relevant legislation，both of which are legis－ lative goals1 Key Words ：Standards，Conformity Assessment，Accreditation，Cer－ tification，Legislative Evaluation，Framework Act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9
제 1 절 「국가표준기본법」입법평가의 배경 ..... 19
제 2 절 「국가표준기본법」입법평가의 대상 및 방법 ..... 22
제 2 장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 25
제 1 절 사후적 입법평가 개관 ..... 25
I．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론 일반 ..... 25
1．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목적 ..... 25
2．사후적 입법평가 절차 ..... 26
3．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 27
I．법성격에 따른 입법평가기준 연구 필요성 ..... 30
제 2 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 31
I．기본법의 의의 및 기능 ..... 31
1．기본법의 의의 ..... 31
2．기본법의 기능 ..... 32
3．기본법의 구성체계 ..... 34
ㅍ．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 36
1．기본법 형식 입법의 증가 ..... 36
2．기본법의 이념 및 방향 평가 필요 ..... 38
3．기본법 간 중복 또는 기본법－개별법 간 모순 등 평가 필요 $\cdots 39$
4．관련부처 협조 및 타법과의 관계 등 실효성 평가 필요• ..... 41
III．기본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와의 차별성 ..... 42
제 3 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한계 및 방법론． ..... 43
I．기본법의 구성상 특수성 ..... 43
ㅍ．종전의 사후적 입법평가방법론의 한계 ..... 44
III．기본법 사후입법평가방법의 주요 유형 ..... 45
1．규범론적 평가 ..... 45
2．실효성 평가 ..... 45
3．법정책적 평가 ..... 46
4．비교법적 평가 ..... 47
제4절 소 결 ..... 47
제 3 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기초분석 ..... 49
제 1 절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경과 분석 ..... 49
I．「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배경 ..... 49
․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경과 ..... 50
제 2 절 「국가표준기본법」의 규율체계 ..... 51
I．「국가표준기본법」의 목적 ..... 51
П．「국가표준기본법」의 체계 ..... 52
III．「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내용 ..... 55
1．개념에 대한 정의 ..... 55
2．국가표준정책의 수립 ..... 57
3．국가표준제도의 확립 ..... 58
4．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 58
제 3 절 「국가표준기본법」의 효력 ..... 59
I．「국가표준기본법」의 적용범위 ..... 59
ㅍ．「국가표준기본법」과 타법과의 관계 ..... 60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63
제 1 절 「국가표준기본법」제 21 조 및 제 23 조에 대한 입법평가．． ..... 63
I．평가대상조항 개관 ..... 63
ㅍ．규범론적 평가 ..... 64
1．적합성평가체제의 의의 및 국가의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의무 ..... 64
2．시험검사기관 인정조항의 내용 및 입법취지 ..... 68
3．평가결과 ..... 69
III．실효성 평가 ..... 71
1．시험 • 검사기관 인정 현황 ..... 71
2．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입법례 분석 ..... 74
3．평가결과 ..... 79
IV．비교법적 평가 ..... 82
1．독일의 인정시스템 ..... 82
2．영국의 인정시스템 ..... 85
3．중국의 인정시스템 ..... 87
4．일본의 인정시스템 ..... 90
5．평가결과 ..... 96
제 2 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대한 입법평가 ..... 99
I．평가대상조항 개관 ..... 99
ㅍ．규범론적 평가 ..... 100
1．제품인증등의 제도도입시 통보•협의 조항의 의의 ..... 100
2．법령 제•개정시 통보•협의의무 관련 입법례 분석 ..... 102
3．평가결과 ..... 106
III．법정책적 평가 ..... 108
1．현행법체계하에서의 제품인증 관련 법률 현황 ..... 108
2．기술규제영향평가 도입 및 시행 관점 ..... 115
3． 2014 년 12 월 개정 「국가표준기본법」의 관점 ..... 117
4．평가결과 ..... 120
제 3 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 3 에 대한 입법평가 ..... 121
I．평가대상조항 개관 ..... 121
ㅍ．규범론적 평가 ..... 122
1．신제품인증조항의 의의 ..... 122
2．신제품인증조항 관련 타법규정사항과의 관계 ..... 125
3．평가결과 ..... 133
III．실효성 평가 ..... 133
1．신제품인증조항의 실효성 확보 방식 ..... 133
2．예비인증－임시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분석 ..... 134
3．평가결과 ..... 141
제 5 장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 ..... 143
제 1 절 입법평가결과 ..... 143
제 2 절 결론 및 입법대안제시 ..... 146
참 고 문 헌 ..... 149
[부록 1] 기본법의 규성방식 비교 ..... 153
[부록 2] 현행법률상 법정의무인증 현황 ..... 175
[부록 3] 현행법률상 법정임의인증 현황 ..... 181

## 표 및 그림 목차

＜표 1＞사후적 입법평가방법의 유형 ..... 28
＜표 2＞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 29
＜표 3＞기본법의 일반적 구성체계 ..... 35
＜표 4＞연대별 기본법 제정추이 ..... 36
＜표 5＞기본법 제•개정 주체（제 15 대～제 19 대） ..... 38
＜표 6＞소관부처별 기본법 현황 ..... 40
＜표 7＞「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구성체계 ..... 53
＜표 8＞「국가표준기본법」의 개념정의사항 ..... 55
＜표 9＞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법체계 ..... 61
＜표 10＞적합성평가체제의 구조 ..... 66
＜표 11＞인정과 지정의 비교 ..... 67
＜표 12＞표준관련 국제기구 및 용어 정리 ..... 71
＜표 13＞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현황 ..... 74
＜표 14＞인정조항 관련 타법령 입법례 비교 ..... 75
＜표 15＞「국가표준기본법」상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법령 현황 ..... 76
＜표 16＞지정제도 관련법령에서의 인정기관 반영 현황 ..... 79
＜표 17＞중국의 인정기구 통합과정 ..... 88
＜표 18＞일본의 시험소 인정기관 및 업무범위 ..... 91
＜표 19＞IAJapan 인정 프로그램 ..... 92
＜표 20＞일본적합성인정협회의 주요업무 ..... 94
＜표 21＞인정기구 운영주체 및 수의 장단점 비교 ..... 97
＜표 22＞법령제•개정시 통보방식 입법례 ..... 102
＜표 23＞법령제•개정시 협의방식 입법례 ..... 104
＜표 24＞제품강제인증 현황 ..... 109
＜표 25＞제품임의인증 현황 ..... 112
＜표 26＞신제품인증 필요 및 해결사례 ..... 123
＜표 27＞외국의 신제품 인증절차 ..... 124
＜표 28＞신제품 인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 ..... 126
＜표 29＞신제품 인증（NEP）의 개요 ..... 129
＜표 30＞「국가표준기본법」과「산업융합촉진법」상의 신제품 인증조항 비교 ..... 132
［그림 1］사후적 입법평가의 일반적 진행과정 ..... 26
［그림 2］중국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조 ..... 89
［그림 3］법령 제•개정 절차와 기술규제영향평가 ..... 116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국가표준기본법」입법평가의 배경

2014년 1월 15 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험인증산업 경쟁 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2017년까지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내시장 13 조원 달성，고급 이공계 일자리 9 천개 창출，매출 3,000 억 원 이상의 히든 챔피언 3 개 육성，해외 매출 10 배 성장을 추 진하기로 하였다．1）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안이 제안된 가장 큰 배경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시험인증분야의 영세성，비전문성，비신뢰성 등의 문제 때문이다．예컨대 몇 년 전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 는 부품까지 부실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에 심 각한 우려를 발생시켰던 것도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기 도 한다．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업무능력에 대한 불신은 결국 외국계 시험인증기관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까지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

이러한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강도가 높아지기는 하였지만，그동안 에도 정부가 시험인증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시험인증분야와 관련된 법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소홀히 다뤄온 것이 아닌가가 문제 되어 왔으며，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정된 법률이 바로 「국가표준기본 법」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산업구조가 수출중심의 제조업으로 형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인증이 제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반정도에 불과하다고 여겨왔고，때문에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가표

[^0]준기본법」의 제정배경인 것이다．「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조항이나，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인정 조항 등과 관련하여 시험인증체계를 최대한 통합하면서도 시험인증산업의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최근에는 규제개 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로서 법령에 따라 시험인 증검사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하나의 제품등에 대해 다수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나，다수의 인증을 위해 동일한 시험검사를 중복적 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국가표준기본법」에 이러한 사항 을 신설한 바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국가표준기본법」의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 리에 관한 장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법체계상으로 볼 때 타법과의 관계에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국가표준기본법」 은＂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국가표준체계의 확립은 물론 운영단계에 해당하는 사항까 지 모두 관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지만，「국가표 준기본법」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표준 및 적합성평가체계와 관련된 전 체적인 법체계를 검토하면 「국가표준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하나의 예로서 시험검사기관 인 정제도의 확립을 위해 인정기구의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시험 •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상의 시험•검사기관

3）2014．12．30．일부개정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이유（http：／／law．go．kr／lsRvsRssnListP．do？lsiSeqs $=179089 \% 2 \mathrm{c} 179080 \% 2 \mathrm{c} 165533 \% 2 \mathrm{c} 136942 \% 2 \mathrm{c} 112765 \% 2 \mathrm{c} 104162 \% 2 \mathrm{c} 92302 \% 2 \mathrm{c} 83865 \% 2 \mathrm{c}$ $52279 \% 2 \mathrm{c} 53259 \% 2 \mathrm{c} 8636 \% 2 \mathrm{c} 8635 \% 2 \mathrm{c} 8634 \& \mathrm{chrClsCd}=010102$ ）．

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관을 인정•지정하여 활용하는 것도「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가표준기 본법」 관련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그 러므로 「국가표준기본법」과 별도로 다수 법률에서의 적합성평가체제 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표준기본법」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은 1999년 제정 이후 약 15년이 경과한 법률로서， 일부개정 세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국가표준기본법」이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구체적인 조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정의 수요가 적었던 탓이기도 하지만，「국가표준기본법」상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평가체제와 관련하 여서는 그동안 정책방향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이에 대해 법체계적 측면에서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입법평가를 실시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그동안 이루어진 입법평가연구에서 법률의 성격에 따라 입법 평가의 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야 할 것을 시사하면서도，아직까지 입 법형식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적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에서도 기본법 형식의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입법의 특성 에 맞는 입법평가의 기준을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국가표준기본법」의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의 장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 중 일부조항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행「국가표준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현행법체계가 「국가표준기본법」의 목적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 부를 검토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향후 국가표준체계의 방향을 설정 하기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관련조항의 실효성 검토와 함께 입법대 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국가표준기본법」입법평가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국가표준 기본법」이다．다만，「국가표준기본법」 전체조항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 시하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표준기본법」의 내용 중 일부조항에 대한 입법평가를 하고자 한다．또 한 본 연구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동법이 실질적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반자료는 동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술표 준원의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없었던 점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의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국가표준기본법」의 체계 를 고려하여 동법에서 규율하는 내용 중 표준체계 확립기반을 전제로 실제 표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분야인 적합성평가체제 관련조항을 선 정하였다．시험인증과 관련된 인정 및 시험인증체계에 대한 관리，시험 인증기준과 위반 시 제재，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등이 유기적•효율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지 않은 것 으로 보이기 때문에，그러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입법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국가표준기본법」 제 3 조，제 21 조 및 법전체적인 체계를 감안 한다면 적합성평가체제는＂구체적인 시험•검사•교정•인증 등의 행 위는 물론 이와 같은 평가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지정행위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통칭한다．다만，적합성평 가체제에 관해 「국가표준기본법」은 구체적으로는 제품인증，신제품인 증，시험검사기관의 인정 등 몇 개의 조문에서만 규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 역시 적합성평가체제 관련조문 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자 한다．이와 같이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은「국가표준기본법」 제 21 조，제 22 조，제 22 조의 3 ，제 23 조로 한다．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기본법 지위에 대한 평가，기본법 형식에 대한 평가，기본법 내용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적어도 기 본법 지위 및 형식에 대한 평가는＇기본법＇으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입법평가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연구에서는 매 우 구체적인 수준으로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 닐 뿐만 아니라，기본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이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법평가기준 역시 구체화되지 는 못하였다．그러므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법 지 위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기본법 형식과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므로，향후 기본법 전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본법 전반 에 적용할 수 있는 사후적 입법평가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우선「국가표준기본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해보고 자 하며，향후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연구시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 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져야 한다．그러나 아직까지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방법에 대한 일 반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법평 가방법은 기본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야 한다．4）그러나 평가대상법률인 「국가표준기본법」이 기본법의 형태 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입법평가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본 연구에서는 입법평가대상

4） 2007 년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에서는 일반적 입법평가방법론으로 주로＂법체계 및 연혁을 검토하는 규범론적 분석，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경제 성 분석，외국입법례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분석，이해관계자의 의식을 조사하는 설 문조사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왔다．이에 대해서는 박영도，『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한국법제연구원，2007；강현철，『입법 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2 외에도 다수의 입법평가보고서 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힘．

조문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방법론으로서 규범론 적 평가, 실효성 평가, 비교법적 평가, 법정책적 평가를 활용하여 평 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론이 기본법에 대한 평가방법의 완성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각 유형에 대한 서술도 종전의 용어와는 내용상 상이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 제 2 장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 제 1 절 사후적 입법평가 개관

I.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론 일반

1. 사후적 입법평가의 의의 및 목적

사후적 입법평가는 이미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법령이 처음 제정당시의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07년 사후적 입법평 가 연구에 따르면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규정의 목표달성을 사후에 파악하고, 법규정의 부수적 효과와 그 밖에 발생한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서 수행되며, 현재의 법규정의 개정필요성과 개정의 범위를 확정 하기 위해서 실행된다.

사후적 입법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1) 현행 법규정이 의도하는 목표 에 도달하였는가, (2)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가, (3)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가, (4) 법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5)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5) 즉,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제정당시 의도한 제정목적 이 실제 달성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하 고 제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5)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181 면.

제 2 장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2. 사후적 입법평가 절차

사후적 입법평가도 일반적인 입법평가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종전의 연구에 따라 사후적 입법평가의 절차는 아래 그 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사후적 입법평가의 일반적 진행과정

6)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82 면.

사후적 입법평가의 단계는 입법평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단계와 이후 실질적인 입법평가단계,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정리단계 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입법평가를 하고자 하는 해당 법규정 에 대한 입법평가 필요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이후 해당 법규정에 대 해 입법평가를 거침으로써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입법평가의 목적과 수단이 확정된 이후에는 입법평가를 위한 기준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를 도출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후적 입법평가의 절차이다.
3.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당위-현재 비교방법, 이전-이후 비 교방법, 사후적 분석방법, 사례연구방법 등이 제시되어 왔다.

당위-현재 비교방법은 법령이 달성하려는 당위 가치와 실무에서 조 사된 법령의 실제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고, 이전-이후 비교방법은 법령시행 이전의 가치와 법령 시행 이후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방법 이며, 사후적 분석방법은 법령 시행 이후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분석 방법을 말하고, 사례연구방법은 법령상 사례와 다른 법령이나 다른 국가 등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7) 평가기준에 따른 각각의 평가방법에 대한 표는 아래와 같다.

[^1]
## ＜표 1＞사후적 입법평가방법의 유형

| 평가방법 | 당위－현재 <br> 비교방법 | 이전－이후 <br> 비교방법 | 사후적 분석방법 |
| :---: | :---: | :---: | :---: | :---: |$\quad$ 사례연구방법

출처：『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8）

8）김대희•강현철•류철호，『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 원，2008，41－42면．

사후적 입법평가 평가기준으로는 그동안 목표달성도, 실효성, 비용 또는 비용편익, 수용성, 부수적 효과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실질적인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지침에서는 사 후적 입법평가 기준으로 목표달성도, 실용성, 경제성, 조화성, 이해가능 성, 수용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9)

## <표 2>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 대기준 | 소기준 |
| :---: | :---: |
| 목표달성도 | 계획된 규정들이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가? |
| 실용성 |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대로 집행되었는가(집행가능성)? |
|  | 수범자들이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준수하였는가(준수 가능성)? |
| 경제성 |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이 많 이 소요되지 않았는가? |
|  |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나 사 회가 부담한 비용이 적절하였는가? |
|  | 서로 다른 수범자들간의 비용과 편익효과가 적절하였는가? |
| 조화성 |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
|  |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이 다른 상위법령에 위반되 지 않는가? |
|  | 개별 규정들간에 상호모순이 존재하지 않는가? |

9) 강현철,『입법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65 면.

| 대기준 | 소기준 |
| :---: | :---: |
| 이해가능성 |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제대로 이해 하고 있는가？ |
|  |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제대로 준수 하거나 이용하고 있는가？ |
|  |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의 구성이 항구적인가？ |
|  |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의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있는가？ |
| 수용성 |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을 제대로 받아 들이고 있는가？ |
|  | 수범자들이 계획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규정에 대하여 거부 하지 않는가？ |

출처：『입법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

## ㅍ．법성격에 따른 입법평가기준 연구 필요성

그동안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입법평가의 이론적 측면 에 더하여，입법평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평가，사후평가，병행평 가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입법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여 왔 다．10）이와 같이 입법평가의 시점에 따라 입법평가의 절차，방법，기 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더 나아가서는 입법평가의 대상 이 되는 법률의 성격에 따라서도 입법평가기준 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인식은 형성되어 왔다．법률은 그 성격， 형식，내용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며，법률을 기본법，특 별법，일반법，규제법，진흥법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때에는

10）2007년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구 분하여 수행하고 있고，이에 대해서는 박영도，『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한국법제 연구원，2007；강현철，『입법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2 외 에도 다수의 입법평가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힘．

각 법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법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기준이나 방법을 해당법률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야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기존의 입법평가의 방법으로 논의되어 온 당위-현재 비교방법, 이전-이후 비교방법, 사후적 분석방법, 사례연구방법의 경우 입법평가의 방법이고, 입법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방법에 포함되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방법 자체는 법률의 특성마다 반드시 달라져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동일한 입법평가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입법평가기준은 해당 법률의 특성에 맞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법률의 입법평가시 입법평가기준은 물론이 고 입법평가방법도 특별하게 구상되어야 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많지는 않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평가의 기법에 대한 연구에서 법률의 특성에 따라 입법평가방법과 기준이 어떻게 달 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11) 이와 같은 측면에 서 분야별 입법의 입법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하에서는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특수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 제 2 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I. 기본법의 의의 및 기능

## 1. 기본법의 의의

기본법은 주로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해당 분야 정책시행을 위한 골격을 형성하거나, 그밖에 개별법으로 구체화

[^2]할 필요가 있는 대강을 정하여 개별법으로 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이라고 논의되고 있다．어떠한 법을 기본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일의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는 형식적으로 제명에 ＇기본법’을 사용하고 있는 법만을 기본법으로 보기도 하고，실질적으로 정책적 기본이념 및 방향，관련법과의 연계성 등 해당분야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기본법으로 지칭하기도 한다．그러나 기본 법 형식의 입법이 증가하면서 기본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 하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었으며，특히 그동안의 기본 법의 제•개정 방향을 검토할 때 현행 법체계에서의 기본법의 개념， 기능，형식，특성도 통일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법이 무 엇인가를 쉽게 서술하기는 어렵다．12）형식적 기본법과 실질적 기본법 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본 연구의 한계상 현행 기본법 체계 전반을 검토할 수는 없으므로，본 연구에서의 기본법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기본법 개념과 마찬가지로 정책추진을 위 한 기본적인 방향 및 정책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정의하도록 한다．또한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 되는 기본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기본법＇의 제명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한정한다．

2．기본법의 기능

기본법의 기능에 대해 본 연구원의 선행연구에서는 국가정책의 방 향제시 및 추진，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정책의 계속성•일

[^3]관성 확보，행정의 통제，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지방분권의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13)}$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이를 구체적으로 종합하고 체계적으 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을 규정하여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관 된 국가정책방향을 유지하고，지속적이고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기 본법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방향을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주로 규율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이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식 역시 포괄적•추상적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법과는 다른 특수 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형식에 대해서는 기본법에서 구체 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하게 되면，이것은 기본법의 기능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타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개별법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 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14)}$

그러나 기본법에 대해 위의 설명한 바에 따라서만 이해하는 경우 현행법체계하에서의 기본법의 기능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기본법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관련 타법령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령의 경우 그 법령 자체가 다른 법령의 총칙 규정 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5）이와 같이 타법과의 연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의 기능은 법률의 분법과 관련하여 더욱 의미를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분법시 공통적인 부분을 기본법에 담으면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는 개별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분야의 개별법과 어떠한 관계에

[^4]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본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분법과정에서 개별법으로 독립적으로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해 기본법에 두기도 하는데, 이때의 기본법은 다른 법률 에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임시적으로 규정을 두는 창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3. 기본법의 구성체계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법의 경우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항들이 일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법은 그 성격상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려고 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일반적인 금지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16)}$

일반적인 법률과 마찬가지로 기본법에서도 총칙에서 목적조항, 정의 조항, 타법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본법의 경우에 는 더 나아가 기본이념에 관한 조항이나 책무조항을 두는 예가 많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기본법에 두고 있는 타법과의 관계 조항을 보면, 관련법의 제•개정시 기본법 조항에 부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규정 도 있고, 타법에 규정이 없는 한 기본법을 적용하도록 소극적으로 규 정하기도 하나, 기본법의 고유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기본법의 취지 에 맞게 관련법을 제•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입법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법의 제 2 장에서는 대체로 총칙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념이나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과 계획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의 제 1 장과 제 2 장뿐만 아니라 보칙조항도

[^5]대테로 기본법 구성체계에서 공통적이다. 기본법에도 벌칙조항을 두 고 있는 법률도 상당수 있으며, 대개 비밀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조항이 많으나, 기본법이 위에서 언급한 창고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제한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벌칙조항도 일반법과 차이가 없게 다수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 }^{17)}$

다만, 기본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이념 조항 등 위에서 언급한 사항 만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분야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 로써 관련 타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도 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법의 특성상 구체적인 작용법적 사항까지 상세 화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되며 통상 제3장 이 하부터 제정되는 방식을 취한다.
<표 3> 기본법의 일반적 구성체계

| ○○ 기본법 |  |
| :---: | :--- |
| 제 0 장 총칙 | 제 0 조 목적 <br> 제 0 조 적용범위 <br> 제 0 조 정의 <br> 제 0 조 국가 등의 책무 <br> 제 0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 0 장 ○○정책 수립 및 |  |
| 조직 구성 | 제 0 조 ○○계획의 수립 <br> 제 0 조 ○○ 위원회(협의회)의 설치 <br> 제 0 조 기타 등등 |

17) 현행법체계하에서 '기본법’의 제명을 달고 있는 법률로서, 제정목적, 기본이념, 책무조항, 법률 적용범위, 타법과의 관계, 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등 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 벌칙조항등에 대해 전체조사를 하였다. 이에 관한 개괄표는 부 록을 참고.

| ○○ 기본법 |  |
| :---: | :---: |
| 제0장 개별분야별 <br>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개별분야별 특성별로 상이 |
| $\vdots$ |  |$\quad$| 제0조 $\bigcirc$ ○에 대한 지원 등 |
| :--- |
| 제0조 보고 |
| 제0조 권한의 위임 • 위탁 |

## ㅍ．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1．기본법 형식 입법의 증가
기본법은 1966년 12월 「중소기업기본법」제정된 이래 2000년 이후에 는 기본법 제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2006년의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에서 조사된 기본법 수인 43 개와 비교하였을 때，${ }^{18)} 2015$ 년 11월 현재 64개（2015년 시행예정 법률 포함）로서 약 $150 \%$ 의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연대별 기본법 제정추이는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기본 법 형식의 신규 제정법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 4＞연대별 기본법 제정추이

| 연도별 | 법률명 | 비 고 |
| :---: | :--- | :---: |
| 1960 년대 | 중소기업기본법 | 1 |
| 1970 년대 | 국세기본법，관광기본법，민방위기본법 | 3 |
| 1980 년대 | 전기통신기본법 | 1 |

18）박영도，『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6．10，16면．

| 연도별 | 법률명 | 고 |
| :---: | :--- | :---: | :---: |
| 1990 년대 | 환경정책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영 <br> 상진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br> (정보화촉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 <br> 법), 건설산업기본법, 자격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br> 교육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 <br> 농촌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자문서 및 <br>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 15 |

※ 본 표는 박영도(2006)의『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보고서의 표내용을 수정•보 완한 것임
※ 괄호안의 내용은 현행법률을 의미(괄호안의 법률은 제정순서로 정렬한 것임)
2. 기본법의 이념 및 방향 평가 필요

기본법은 실질적인 정부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다 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는 여타 다른 법률에 비해 기 본법은 국회와 정부가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제•개정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 15 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기본법 제•개정 숫자 중 의원발의와 정부제출의 비중 을 조사한 결과, 의원발의의 수는 정부제출에 비해 현저히 높으나, 실 제 제•개정이 이루어진 비율을 보면 의원발의와 정부제출 비율이 유 사하고, 위원장의 대안형태로 통과되는 기본법의 비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기본법 제•개정 주체(제15대~제19대)

| 기본법 제 - 개정안 <br> 전체(제 15 대~제19대) | 의원발의 |  | 정부제출 |  | 대 안 |  |
| :---: | :---: | :---: | :---: | :---: | :---: | :---: |
|  | 개 수 | 비 중 | 개 수 | 비 중 |  |  |
| 1810건 | 1440건 | 79.6\% | 228건 | 12.6\% | 142건 | 7.8\% |
| 기본법 제 • 개정안 | 의원발의 |  | 정부제출 |  | 위원장제안 |  |
| (제15대~제19대) | 개 수 | 비 중 | 개 수 | 비 중 | 개 수 | 비 중 |
| 359건 | 116건 | 32.3\% | 101건 | 28.1\% | 142건 | 39.6\%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본법의 개정이나 신규제정은 정부에 대한 역할 요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서, 정책방향은 수시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기도 하므로 기본법은 실질적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는 물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 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입법목적과 입법사항인 정책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되므로 필요하다.
3. 기본법 간 중복 또는 기본법-개별법 간 모순 등 평가 필요

기본법의 경우 개별분야의 정책방향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정 책분야별로 소관부처에서 기본법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소관부처별로 한 개 이상의 기본법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 면 소관부처별로 하나 이상의 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부처도 있다. 하 나의 부처가 반드시 기본법을 하나만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법을 가진 부처의 기본법의 내용과 체계를 검토해 보면 반드 시 기본법을 다수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법률도 있다. 다수의 정책적 목적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의 출현 배경을 고려한 다면, 기본법은 소관부처별로 부처의 역할을 모두 포함하는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의 홍수를 막고, 분야에 대한 전 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본법 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본법과 기본법의 영향을 받는 개별법 간의 내용상의 모순에 대해서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법의 원칙적인 특성이나 형식을 고려하면 기본법과 개별법간의 중복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이지만, 기본법과 개별법 사이에서는 그 내용상의 모순이 있을 수 있 다. 이는 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입법평가를 통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19)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법에 대해서는 기본법간의 중복 문제는 물론, 기본법과 개별법간의 모순에 관한 사항을 평가함으로써, 기본법 형식 의 법제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별 법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19) 다만, 이 경우 기본법-개별법 간 모순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개별법에 대한 입 법평가의 영역인지,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영역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향후 더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제 2 장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표 6> 소관부처별 기본법 현황

| 부 처 | 개 수 | 기본법 명칭 |
| :---: | :---: | :---: |
| 기획재정부 | 1 | 국세기본법 |
| 경 찰청 | 1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고용노동부 | 2 | 근로복지기본법 |
|  |  | 고용정책 기본법 |
| 고용노동부,교육부 | 1 | 자격기본법 |
| 공정거래위원회 | 1 | 소비자기본법 |
| 교육부 | 2 | 교육기본법 |
|  |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 국가보훈처 | 1 | 국가보훈 기본법 |
| 국무조정실 | 4 | 행정규제기본법 |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  | 행정조사기본법 |
| 국무조정실, 외교부 | 1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 국민안전처 | 4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  | 소방기본법 |
|  |  | 민방위기본법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국방부 | 1 | 군인복지기본법 |
| 국토교통부 | 7 | 건설산업기본법 |
|  |  | 건축기본법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  |  | 국토기본법 |
|  |  | 주거기본법 |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1 | 물류정책기본법 |
| 기획재정부 | 2 | 부담금관리 기본법 |
|  |  | 협동조합 기본법 |
| 농림축산식품부(현재는 해양수산부와 공동) | 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문화체육관광부 | 6 | 관광기본법 |
|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  |  | 국어기본법 |
|  |  | 문화기본법 |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  |  | 영상진흥기본법 |


| 부 처 | 개 수 | 기본법 명칭 |
| :---: | :---: | :---: |
| 미래창조과학부 | 4 | 과학기술기본법 |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  |  | 전기통신기본법 |
|  |  | 지식재산 기본법 |
|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 1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1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 법무부 | 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보건복지부 | 4 | 건강검진기본법 |
|  |  | 보건의료기본법 |
|  |  | 사회보장기본법 |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산림청 | 1 | 산림기본법 |
| 산업통상자원부 | 2 | 국가표준기본법 |
|  |  | 제품안전기본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 식품안전기본법 |
| 여성가족부 | 3 | 건강가정기본법 |
|  |  | 양성평등기본법 |
|  |  | 청소년 기본법 |
| 중소기업청 | 1 | 중소기업기본법 |
| 해양수산부 | 2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 행정자치부 | 4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  |  | 지방세기본법 |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  |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 환경부 | 2 | 지속가능발전 법 |
|  |  | 환경정책기본법 |

4. 관련부처 협조 및 타법과의 관계 등 실효성 평가 필요

기본법은 하나의 부처에 소관된 법률이더라도 그 분야 혹은 기본법 의 적용대상에 따라 다수의 부처와 관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계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체계정합과, 부처간의 협조 등도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기본법의 특성상 소관부처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정책수행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이러한 경우 기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책수행 및 관리 주

체를 개별부처로 정하고 타 부처의 협조를 받도록 하거나, 일정한 정 책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책수행 주체를 다수의 부처의 장 으로 정하기도 한다. 기본법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 본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 내에서의 협조는 물론, 타부처와의 정책의 연계성과 분야별 성격을 고려하여 기본법이 실제 제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부처, 여러 법률과 관련되는 기본법이 많다는 점에서 기본법이 실질적인 효 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
III. 기본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와의 차별성

기본법에 대해서도 사전적 입법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가 모두 필 요하다. 기본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는 해당법안이 추구하는 목적 의 정당성과 정책적 방향설정의 타당성에서부터 어떠한 수단을 통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 가가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연 해당법안이 기본법 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해당법안을 기본법의 형식으로 제정하 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도 사전적 평가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기본법의 성격과 기능이 다양하고, 기본법의 제정시 기 본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법제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기본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의 대상 역시 그 제정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부터 내용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본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는 일반법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그 형식 및 이 념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타법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계성 측면에 대 해서는 사전평가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나, 한편으로 기본법에 도입되는 수단에 대한 평가강도는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다. 이는 기본법이 직접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기보다는 개괄적인 수

단을 정하거나 국민이 아니라 정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방식의 규정 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제 3 절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한계 및 방법론

I. 기본법의 구성상 특수성

기본법에 대한 종전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 념형, 정책형, 대책형, 개혁추진형으로 구분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본법 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목적과 의의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한 기본법의 목적도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성격분류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20)}$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시에는 기본법이 추구하는 다수의 목 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본법의 이와 같은 성격은 사후적 입법평가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법의 내용상 개별분야별 특수성을 담고 있는 법률의 내용 에 대해서는 타법과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이 유에서 국회의 제•개정 심사에서는 특별히 타법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언급하면서 기본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법의 이념 에 따른 타법령의 체계정비를 요구하고 있다.21)
20) 기본법의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박영도,『기본법의 입법모델연 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10, 118-121면 참조.
21)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대해 국회는 "법안은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혁신을위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발전적으로 제정되는 대체법적 성격을 지닌 법으로, 기본법의 특성상 선언적•정책적 규범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기본법의 이념에 맞게 과학기술관련 개별법령들에 대한 체계 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안 심사보고 서, 2000.12, 4-5면)으로 보고 있으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기본법은 해 당분야의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프로그램적 규범을 많이 포함하고 있 고, 각 개별법령의 모체가 된다는 점에서 동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에 맞춘 개별법령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할

## ㅍ. 종전의 사후적 입법평가방법론의 한계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방법은 정량평가방식과 정성평가방식으로 구분 되어, 입법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비용편익•비용효과• 통계분석 방식 혹은 효용가치•비용결과•급부경로 등의 분석방법등 의 정량적 평가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기본법의 경우에는 이념,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시책의 대강 과 취지를 정하여 특정분야의 법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그 특성 때문에 기존의 입법평가방법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기본법에서는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권리의무사항을 정하지 않는 것 이 많으며, 이러한 기본법의 성격을 행정법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일 반적인 작용법이 아닌 조직법적 성격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법은 국회가 정책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는 경향이 강한 법률로서, 국민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수범자를 국민으로 보고 작 성된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기준이나 방법론은 기본법에 대 해 평가시에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기본법은 크게 이념적 방향성, 정책적 방향성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서, 이러한 법형식에 대한 입법평가는 이넘적 방향 혹은 정책적 방향 대로 개별법들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게 개별법이 제•개정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평가 가 주된 평가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 용의 추산이 어렵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수범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 치단체 등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성 관련 입법평가방법 역시 달라져야 한다. 만약 기본법에 대해 종전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기본법

[^6]을 구체화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시에는 두 개의 법률에서의 평가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종전의 사후적 입법평가방법론의 한계 가 될 수 있다.

## III. 기본법 사후입법평가방법의 주요 유형

## 1. 규범론적 평가

기본법 역시 일반적으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방법론인 규범론적 평가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기본법 형식에 대한 규범론적 평가는 기 본법으로서의 형식에 관한 사항부터, 기본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어 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조문자체가 가지는 오류에서부터 큰 틀에서의 법체계내에서의 내용상의 오류 등에 대한 평가로서, 입법평 가의 기본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법에 대한 규범론적 평 가는 기본법 그 자체의 형식적•내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 는지에 대한 형식적 평가는 실제 기본법이 어떠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정적이지 못한 이유로, 내용적인 평가는 기본법이 매우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이유로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측면 이 있다. 규범론적 평가에서의 형식평가는 향후 기본법의 형식이 정 비되는 때까지는 단순한 형식에 대한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내 용평가 역시 소극적으로 헌법위반이나 타법사항과의 충돌 등에 대한 평가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 2. 실효성 평가

실효성 평가의 경우 기본법의 해당조문의 내용이 개별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기본법에 대한 평가에서는 자주 평 가방법론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평가방법이고, 법체계성평가와도 유

사할 수 있다. 법률별로 적합한 입법평가수단을 활용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법의 경우 개별법을 연계하는 법률이라는 점에 서 기본법에 대한 평가방식은 개별법에서 얼마만큼 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법 제•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이 주효할 수 있다. 특히 기본법의 장 중에서도 총칙이나 조직 및 계획관련 장을 제외한 개별분야의 정책사항을 정하고 있는 장부분에 대한 입법평가는 기본 법 조항과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 개별법에서 기본법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입법례 조사 및 평가 등의 관점으로 입법 평가가 실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실질적으로 개별법을 분석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입법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시 관련되는 모든 개별법과의 관계를 모두 검토하여야 하므로, 그 작업상의 여러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 으므로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그 대상을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 3. 법정책적 평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념 및 목표설정은 국가적인 정책방향으 로서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입 법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합 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기본법의 이념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입법 평가결과는 일반법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의 형태로 도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본법에 대한 입 법평가결과는 정책적 제언에 불과하다.
다만, 기본법에서의 이념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체적인 관련입법과 정책과의 관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 어, 국가의 여타 많은 정책과 배치되는 사항을 이념이나 방향으로 정 하고 있는 기본법의 내용은 입법평가를 통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정책동향과 우리 법체계에서의 여러 가지 현황을 고려하여 기본법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 4. 비교법적 평가

비교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법에 대해서도 비교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 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에 대해 외국의 법제나 동향을 고려 하여 평가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특히 국가간의 여러 장벽이 없어진 현재에는 국가의 이념과 정책방향등이 세계적으로 유 사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법제 및 정책등 을 고려하여 기본법을 평가하는 것은 특히 의미가 있다.

비교법적 평가는 국제적으로 연계된 분야를 규율하는 기본법에 대 해서는 특히 유용하며, 국가의 여러 분야의 정책방향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비교법적 평가방식의 활용이 요구된다.

## 제 4 절 소 결

앞서 서술하였던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에서 보면, 기본 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여타 다른 형식의 법률에 비해 중요하다. 물론 그 특성상 입법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가시적이지 않을 수 는 있으나, 기본법이 그 제정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분야 정책의 방향 을 제시하고, 여러 관련법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 한다면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직접 적인 국민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률이 되어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다른 형식의 입법과는 달라야 하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연구 하기 위한 기반은 기본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 이후 에 이를 고려한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방법과 입법평가기준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본법에 대한 연구 자체의 범위도 매우 넓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평가기준 등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범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입법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 법에 대해서도 그 특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본법 입법평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 3 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국가표준기본법」 기초분석 

## 제 1 절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경과 분석

I．「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배경

선진국에서는 기술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표준 및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켜 왔으나，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 지 못하였다．22）이후 표준 및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에 관해 국가의 적 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128조 제2항에＂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고，현 재에 이르고 있다．23）「헌법」에 표준에 관한 근거가 신설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표준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다가， 1999 년에 와서야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

22）「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당시 국회의 검토보고서는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곳곳 에 담고 있음（산업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안 검토보고서，1998．12）．
23）현행「헌법，에서는 제 127 조제 2 항이다．「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경과를 나타낸 표 는 아래와 같다（김동진 외，＂우리나라 국가표준체계 현황과 선진화 방안＂，한국기술 혁신학회지， 2000,19 면）．

| 일 자 | 경 과 |
| :---: | :---: |
| 1980．3．8． | 법제처에 국가표준제도의 명문화 건의 |
| 1980．4． 18 | 국회에 국가표준제도의 명문화 건의 |
| 1980．10．27． | 헌법 제128조 2항 국민투표로 확정 |
| 1981．7．24． | 정부의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계획 발표 |
| 1987．10．29． | 헌법 127조 2항 국민투표로 확정 |
| 1992．12．8． |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정 |
| 1997．8．7． | 국가표준기본법 입법 건의 |
| 1999．2．8． | 국가표준기본법 공포 |
| 1999．7．1． | 국가표준기본법 발효 |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또한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배경에서 도＂국가표준은 공업뿐만 아니라 건설，보건，환경 등 경제•사회의 전 분야에서 준용되는 기반적인 기술기준이기 때문에，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관련 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표준제도가 각 부처에서 개별적•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WTO 체제 출범이후 과거 관세 등 정치적 무역장벽에서 기술 장벽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간의 표준•적합 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적극 추진중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표준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국제기준에 의해 바로 잡을 필요 성이 시급＂24）하다는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국가표준기본법」은 안전분야，품질 분야，환경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의 표준화를 촉진하고，외국과의 표 준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표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정된 법률임을 알 수 있다．

## ㅍ．「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경과

「국가표준기본법」은 1997년 11월 3일 발의하였다가 철회되었고，이 후 1998년 11월 다시 발의되어 1999년 2월 8일 제정된 법률이다．「국 가표준기본법」은 1999년 제정 이후 총 10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일부 개정은 세 번 이루어져 제정당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정된 것은 아 니며，큰 틀에서는 제정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제 정이후「국가표준기본법」의 일부개정사항만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국가표준기본법」은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90호로 개정되었으며， 이때의 개정은 첫째，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제품에 대한 인 증제도의 표준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안전•보건•환경 • 품질

24）산업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안 심사보고서，1998．12，3면．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증마크를 하나의 국가통합인 증마크로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그리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4월 5일 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여건의 조성과 기업의 신제품 상품화의 촉진을 위하여 현 행 기준 또는 규격을 적용할 수 없거나，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제 품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 또는 규격에 따 라 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개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 다．25）또한 기업에게 양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야별로 시 험인증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하는 근거를 두는 개정을 하였다．${ }^{26)}$

이어서 2014년 12월 30 일 개정은 현행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 험•검사기관에게 기록의 중요도에 따라서 해당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도록 보관의무를 부여하 는 개정과 함께，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인증시험 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 제 2 절 「국가표준기본법」의 규율체계

> I. 「국가표준기본법」의 목적

「국가표준기본법」은 제1조에서＂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

[^7]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동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동 법의 목적조항에서는 표준제도의 확립과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라 는 추상적 목적을 언급하고 있으나，동법의 제정당시 목적으로 언급된 사항들은 개별부처에서 중복관리하고 있는 인정•인증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총괄관리를 통해 비효율성을 줄이고，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 문기관을 육성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 지하며，국가 간의 상호인정협정을 신속히 체결하여 무역기술장벽을 효 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7 ）이러한 세부목적은 모두 산업적 측면에 기여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 「국가표준기본법」의 체계

「국가표준기본법」은 제명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으며，그 구성내용도 기본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국가표준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동법 은＂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서，법률의 적용범위가 표준이 필요한 영역 전체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국가전 체적인 국가표준정책과 관련한 조직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 는 등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은 총 5 개 장， 36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국 가표준정책과 관련된 장，국가표준제도를 위한 기반을 규정하고 있는 장，그리고 표준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본 연구 에서의 평가대상은 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장에 포함된 적 합성평가체제와 관련된 제4장에 해당하는 조항이다．국가표준기본법령 은 「국가표준기본법」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으로만 구성되어 있 으며，그 체계도는 아래와 같다．
＜표 7＞「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구성체계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 1 장 총 칙 |  |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  |
| 제 3 조（정의） |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 제4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 2 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  |
|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 기관 위원） |
|  | 제 3 조（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
|  |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 제 5 조（수당） |
|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 제5조의 2（운영 세칙） |
|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
| 제 8 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 행계획의 공고） |
| 제 3 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  |
|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  |
| 제 10 조（기본단위） |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
|  |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
|  | 제 10 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
| 제11조（유도단위） | 제9조（유도단위） |
|  | 제 11 조（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 등） |
| 제 12 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  |
|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  |
|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 3 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국가표준기본법」 기초분석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갚䒑준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 15 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제 14 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 제17조（법정 계량） |  |
| 제 18 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
|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
| 제4 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  |
| 제 20 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 15 조의 2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
|  | 제 15 조의 3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
| 제22조（제품인증등） |  |
| 제22조의 2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 제15조의4（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 |
|  | 제 15 조의5（표준인증심사제의 운영 등） |
| 제22조의 3 （신제품의 인증 등） |  |
|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제 15 조의 6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
| 제 23 조（시험 • 검사기관 인정 등） | 제 16 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 |
| 제 24 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  |
|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
| 제 25 조의 2 （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 제 16 조의 2 （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 차 등） |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
|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  |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 산지원 등） |
|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  |
| 제 4 장의 2 삭제＜2014．12．30＞ |  |
| 제 5 장 보 칙 |  |
| 제31조（권한의 위임 • 위탁） | 제20조（권한의 위임） |

## III．「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내용

1．개념에 대한 정의

「국가표준기본법」은 표준과 관련된 기본개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관련분야의 개별법에서도 특별히 달리 정할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개념으로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국가표준기본법」은 표준의 개념을 국가표준，국제표준，측 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에 대한 정의조 항을 두고 있다．그 외에 계량에 관해 필요한 개념과 교정관련 사항 을 정하고 있으며，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적합성평가체제에 포함되 는 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적합성평가 개념도 정의하고 있다．
＜표 8＞「국가표준기본법」의 개념정의사항

| 개 념 | 정의사항 |  |
| :---: | :---: | :---: |
| 국가표준 <br> （national <br> standards） |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 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 는 모든 표준 |  |
|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 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  |
| 측정표준 <br> （masurement standards） |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 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현시（顯示）하며，보존 및 재 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측정기기，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 |  |
|  | 국가측정표준 |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 한 기준으로서 국가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 |
|  | 국제측정표준 |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 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표준 |

제 3 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국가표준기본법」기초분석

| 개 념 | 정의사항 |
| :---: | :---: |
| 참조표준 <br> （reference <br> standard） |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 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 적 상수，물성값，과학기술적 통계 등 |
| 성문표준 <br> （dacumentary standard） |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 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규격，지침 및 기술규정 |
| 산업표준 （industrial standards） | 광공업품의 종류，형상，품질，생산방법，시험•검사•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일하 고，단순화하기 위한 기준 |
| 정 |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 |
| 측정단위 또는 단위 |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 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 |
| 국제단위 | 「미터협약」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 |
| 계량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 기 위한 일련의 작업 |
| 법정계량 |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 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 |
| 법정계량 <br> 단위 |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 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 |
| 표준물질 | 장치의 교정，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 |
| 교정 |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표준물질，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 |
| 소급성 <br> （遡及性） | 연구개발，산업생산，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 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 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 |
| 시험 • 검사 <br> 기관 인정 |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 하는 행정행위 |


| 개 념 | 정의사항 |
| :---: | :---: |
| 적합성평가 | 제품，서비스，공정，체제 등이 국가표준，국제표준 등을 충족 <br> 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인증，시험，검사 등 |
| 표준인증 <br> 심사제 | 설계평가，시험 •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 <br>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
| 국가통합 <br> 인증마크 | 안전 • 보건 • 환경 • 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 <br> 일화한 것 |

출처：「국가표준기본법」 제 3 조

## 2．국가표준정책의 수립

「국가표준기본법」의 국가표준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장에서는 국가 표준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해 정하고 있다．정부가 주체가 되어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위원으로 포함되는 국가 표준심의회를 두며，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과 관련된 관련 부처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28）을 심의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국가표준심의회의 위원이 되는 관련 중앙행정기 관의 위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렁」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미 래창조과학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 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 관，해양수산부차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조달청장，방위사업청장，산 림청장이다．한편，정부는 5년마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28）국가표준기본법령에 따르면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1．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유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2．국제표준 관련 기 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3．표준 관련 기술 의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4．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5．측정 표준，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조정，6．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이다．

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합하고, 국가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3.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제3장에서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요건들에 관해 규정하 고 있다. 각각의 조문에서는 측정단위, 기본단위, 유도단위, 국제단위 계 외의 측정단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을 정하 고, 국가교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사항,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참 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법정계량, 그리고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비롯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가표준제도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 4.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의 장에서는 실질적인 표준제도의 운 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 20 조제 3 항에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표준의 국제기준부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총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강제인증이나 강제마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제도 및 신제품 인증, 품질경영체제 등의 인증,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등 표준체계의 운영과 관리 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제 3 절 「국가표준기본법」의 효력

## I．「국가표준기본법」의 적용범위

「국가표준기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과 별도로 법률의 적 용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법제처 및 국회는 적용범위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법률에서 ‘적용범 위＇에 관한 조항과＇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을 모두 규정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분하여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 이에 따르면＇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법률에 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법률이 적용되는 범 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반면，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의 적용•적용배제，준용，우선 적용 및 해당 법률의 우선적용과 같이 그 법률과 다른 법률 간의 관계에서 어느 법률이 먼 저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구분한다．

법적용범위에 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2조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활동의 모든영역에 적용되도 록 규정하고 있다．「국가표준기본법」 제정안에서는 동법안의 적용범 위를＂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해야 하는 경제사 회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규정하였으나，국회심의과정에서 이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현행과 같이 제 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30）「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국가표준＇ 의 개념을 제 3 조제 1 호에서＇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합리성

[^8]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 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 든 표준’이라고 보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국가표준기 본법」 역시 매우 넓게 적용될 수 있다．

## П．「국가표준기본법」과 타법과의 관계

기본법에 대한 논의 중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기본법의 성격상 다 른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이에 대 해 선행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기본법 자체는 개별법과의 계층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기본법마다의 구조 및 성격이 상이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이러한 점에서 기본법과 타법과의 계층구조에 대한 해석은 개별 기본법마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견해31）에 동의하며，기본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표준기본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의 적용범위 조 항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를 취하고 있다．「국가표준기본법」은 제2조에 따라 표준과 관련된 모 든 영역에 적용되며，동법 제4조의 2 에 따라 국가표준에 관해 다른 법 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이 적 용된다．한편，「국가표준기본법」은 법정계량과 관련된 사항과 산업표 준의 제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계량에 관한 법률」과 「산업표준 화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사항을 도식화하여 보면 국 가표준제도와 관련한 법체계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31）박영도，『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6．10，149면．

##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국가표준을 중심으로 하여，국가표준에 관해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국가표준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므로，적합성평가체 제와 관련하여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는 않다．그러나 표준제도 내에 적합성평가체제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적합성평가체제의 타법과의 관계 또한 표준에 관한 법적용과 동일하 게 해석하면 된다．

현행 법체계를 검토해보면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 제품，서비스，공 정，체제 등의 교정，인증，시험，검사등에 관한 사항 등은 「국가표준 기본법」 외에 개별법에 상세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이 적용된다．그러나 「국가표준기본법」이 타법과의 관계 조항에서 타 개별법의 제•개정시 「국가표준기본법」의 목적이나 이념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을 비롯한 적합성평가체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 가표준기본법」의 개별조항과 배치되는 조항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그러므로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해석하는 것

제 3 장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국가표준기본법」 기초분석

역시 「국가표준기본법」을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이는 기본법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서，개별법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책에 따라야 함은 물론，개별 조항에서 특별히 달리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 기본법의 규율사 항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법령이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기본법에 적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제 1 절 「국가표준기본법」제 21 조 및 제 23 조에 대한 입법평가

I．평가대상조항 개관

| 적용대상 |  |
| :---: | :---: |
| 정부（시행령：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조항연혁 |  |
| 제21조 | 1999．2．8．제정당시부터 존재 <br> 2009．4．1．개정시 용어 및 사업유형 추가 개정 <br> 2010．4．5．개정시 인용조문 정비 |
| 제23조 | 1999．2．8．제정당시부터 존재 <br> 2009．4．1．개정시 단순 용어정비 <br> 2014．12．30．개정시 제4항 추가 |
| 규정내용 |  |
| 제 21 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1）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 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국제기준＂ 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br> （2）제 1 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 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br> 2．제품인증체제 구축 <br> 3．시험－검사기관 인정 <br> 4．교정기관의 인정 <br> 5．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br> 6．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br> 7．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  |

8．제 22 조의 4 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 23 조（시험 • 검사기관 인정 등）（1）정부는 제 21 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2）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 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4）제 2 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 • 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 검사의 신 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 16 조（시험 • 검사기관의 인정）（1）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제 1 항에 따른 인정기구 로 지정할 수 있다．
（3）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 • 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 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규범론적 평가

1．적합성평가체제의 의의 및 국가의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의무
（1）적합성평가체제의 의의
「국가표준기본법」제 21 조는 정부에게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 증사업의 추진과 함께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국가표준기본법」 은 정의조항에서 인정 개념과 적합성평가 개념을 정하고 있다．

인정（Accreditation）은「국가표준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르면＂공식 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로 정의된다．인정권한이 있는 인정기구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은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인정기구는 일정한 기관이나 법 인이 적합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 가하고 보증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적합성평가기관은 인정 기구의 인정을 받아야만 적합성평가업무를 할 수 있다．현행법에 따 르면 인정행위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인정기구의 인정근거 역시 법 률에 두고 있다．

한편，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의 개념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 19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르면 적합성평가는＇제품，서 비스，공정，체제 등이 국가표준，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 는 교정，인증，시험，검사 등’이다．그러므로 제품이나 서비스，공정이 나 체제등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 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 혹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모 든 표준에 부합하게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시험 • 검사하거나， 인증하거나，교정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은 모두 적합성평가이다．
적합성평가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적합성평가를 수행하 는 시험검사기관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인정제도，시험－인증•검사 절차 및 방식 등 적합성평가와 관련되는 총체적인 평가체제가 바로 적합성평가체제라고 할 수 있다．즉，적합성평가체제는 크게 인정체제 와 인증등의 체제로 구분할 수 있고，이는 아래 도식도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표 10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조


（2）인정과 지정 개념의 구분
현행법체계에서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방식은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 외에，개별법에서 특정기관에 시험인증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정（Designation）이 있 다．법률에서는 인증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증등과 관련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 데，이 경우 시험검사기관을 정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예가 많다．이때의 지정행위 역시도 인정행위와 마 찬가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 지는 것이고，통상 지정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다．인정과 지정은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예컨대 인정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장 비，인력，시스템 등을 평가하고，지정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안 전이나，환경，품질 등을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32)}$

32）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4．11， 5 면［참고자료］．

| 구 분 | 인정（Accreditation） | 지정（Designation） |
| :---: | :--- | :--- |
| 근 거 | 표준（ISO） <br> ISO17025－시험기관의 요건 등 <br> ＊국가표준기본법 23조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

출처：국회「국가표준기본법」검토보고서（2015）${ }^{33)}$
（3）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의무
「국가표준기본법」에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근거를 두게 된 것을 두고＂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법제도와 하부구조의 취약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과 함 께 도입되어，국내 표준분야의 획기적 발전과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 제적 상호인정협정체결에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 된 바 있다．${ }^{34)}$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표준기 본법」은 제21조제2항에 정부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품인증체제 구 축，시험 • 검사 • 교정기관 인정，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 에 대한 승인，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기타 체제 인증 등 신규 인 증제도 구축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국가

33）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4．11，19면을 수정한 것임．
34）산업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안 검토보고서，1998．12，8면．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표준기본법」 제23조의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제도 역시 적합성평가체제 의 구축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동법 제21조와 연계되어 있으므 로，제 23 조에 대한 평가시 제 21 조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시험검사기관 인정조항의 내용 및 입법취지
（1）「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의 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1항은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 부에게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23조제2항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인정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동법 제 23 조제 3 항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하위법령에서 정한 인정기구를 활용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인정기구 및 운 영기관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심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동 시행령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 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2）「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입법취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 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 하위법령에서 정한 인정기구를 활용하 도록 하는 이유는 인정 및 지정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민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국가적으로도 인정제 도와 별도로 지정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성측면에서 바 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국가표준기본법」상의 인

정기구를 활용한 인정시 시험검사기관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국제기준 에 부합하게 되므로 시험검사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도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개별법령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지정）요건에「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정기구에 의해 인정받 은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정부의 시험검사업무의 효율성 확 보 및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 한 것 역시 동조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평가결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은 기본적으로 시험•검사기관 인정 제도의 확립을 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 23 조제 3 항에서는 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 23 조제 2 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23 조제 2 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 16 조제 1 항 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 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만 동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국가기술표 준원을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로만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분석해보면，법률 만 고려하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23 조제 3 항에 따른 인정기구 를 활용할 의무가 있으나，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검토하면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할 수도 있 고，국가기술표준원을 인정기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결국 「국가표준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정제 도 도입시＇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인정기구＇또는＇국가기 술표준원＇을 인정기구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그러나 현재와

같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인정기구가 되고，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현실에서는＂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스로 지정 한 인정기구를 활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이는 법률과 시행령 간의 체계가 상호순환적인 구조로 규정되 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결과적으로 법률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시행령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특히 「국가표준기본법」은 동법 시행령으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시행령에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기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지정된 인정기구가 인정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할 뿐，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은 방식의 규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인정기구를 어느 조직에 둘 것인지，혹은 인정기구를 몇 개로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의견대립의 결과이기는 하지만，실질적으로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규율체계임은 분명하다．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된 인정기구 역시도 인정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여야 하나，이 경우 인정기준이나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하여야 할 노력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처음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표준분야 및 적합성평가 분야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한 「국가표준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적어도 이러한 방 식의 규정은 법령의 해석을 통해서도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 지 못하게 하며，법률과 시행령의 규율내용 역시 순환적으로 이루어 져 있을 뿐만 아니라，「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령의 관련조항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III．실효성 평가

1．시험•검사기관 인정 현황
（1）「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
시험검사기관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국제규범에 따 라 각국에서 인정되고 있고，이러한 인정기관간의 협의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체 가입기구간의 상호인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 다．1977년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 tion Cooperation：ILAC）가 설립된 이래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는 각 국의 시험기관인정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기준의 공유，시험인 증결과에 대한 인정 등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발전시켜 무역기술장벽 을 줄임으로써 국제 무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5)}$
＜표 12＞표준관련 국제기구 및 용어 정리

| 국문명 | 영문명 | 설 명 |
| :---: | :---: | :---: |
|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 | International <br> Laboratory <br> Accreditation <br> Cooperation（ILAC） | －1996년 시험•교정•검사기관이 발행한 성적서의 국제상호인정（MRA）을 통해 무 역기술장벽 해소 및 세계무역 촉진에 기 여하고자 설립 <br> －시험기관，검사기관 등에 대한 국제상 호인정협정（ILAC－MRA）운영 <br> － 72 개국 86 개 인정기구， 2015.05 기준 |
| 국제인정기구 포럼 | International <br> Accreditation <br> Forum（IAF） | －1993년 경영시스템•제품인증 분야 인정 기관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체결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 및 세계무역 촉 진에 기여하고자 설립 |

35）써티코리아，『MRA에 대비한 국내 정보통신 지정시험기관 관리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04．12，84면．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국문명 | 영문명 | 설 명 |
| :---: | :---: | :---: |
|  |  | －경영시스템 • 제품인증 인정기관 상호인 정협정（MLA）운영 <br> －55개국 60 개 인정기구， 2015.05 기준 |
| 아시아－태평양 <br> 시험기관 <br> 인정협력체 | $\begin{gathered} \text { Asia-Pacific } \\ \text { Laboratory } \\ \text { Accreditation } \\ \text { Corporation(APLAC) } \end{gathered}$ | －1992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험•교 정 • 검사기관이 발행한 성적서의 MRA 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 및 무역촉 진에 기여하고자 설립 <br> －시험，검사분야 APLAC－MRA 체결 <br> －23개국 37 개 인정기구， 2015.05 기준 |
| 아시아 • 태평양 인정협력체 |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PAC） |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영시스 템－제품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MLA 체결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 및 무 역촉진에 기여하고자 설립 <br> －경영시스템 • 제품인증분야 PAC－MLA 체결 <br> － 19 개국 22 개 인정기구， 2015.05 기준 |
| 상호인정협정 | Mutual Recognition <br> Arrangement（MRA） | －ILAC，APLAC의 다자간 협정 |
| 상호인정협정 |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MLA） | －IAF，PAC의 다자간 협정 |
| 국제표준화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 －1947년 설립된 국제표준 개발기구 <br> －164개국 회원，19977종 표준 발간， 2013 년 기준 |

＊출처：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2015）정리

「국가표준기본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인정기구는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KOLAS），한국제품인정기구（Korea Accre－ ditation System：KAS）가 있다．한국인정지원센터（Korea Accreditation Board：
$\mathrm{KAB})^{36}$ 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인정지원센 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 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 조의 4 에 근거를 두므로，「국가표 준기본법」의 논의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한국인정기구는 시험검사분야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아시 아－태평양 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의 우리나라 인정기구이며， 20 년 이상 전기전자，환경，IT 등 전 산업분야에서 공인시험 인프라를 제 공하고，1998년 MRA를 획득하여 70여개 국에서 한국인정기구 시험성 적서가 통용되고 있다．${ }^{37)}$ 한국제품인정기구는 제품인증분야 국제인정 기구 포럼（IAF），아시아•태평양 인정협력체（PAC）의 우리나라 인정기 구이며，한국인정지원센터는 경영체제 인정기구로서 경영시스템인증분 야 국제인정기구 포럼（IAF），아시아•태평양 인정협력체（PAC）의 우리 나라 인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8)}$

그러나 이 외에도 개별법에 따라 개별제도를 운영하는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도 인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산업통상자원부 운 영 인정기구 외에도 개별법상의 근거를 가지는 다수의 인정기구가 운 영되고 있다．
（2）「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 현황
국가표준기술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은 512 개에 이르고 있으며，2010년에 비해 한국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한국인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ab．or．kr，2015－11－10 최종방문）．
37）검사기관，교정기관，메디칼시험기관，숙련도시험기관，시험기관，제품인정기관，표 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중（한국인 정기구 홈페이지（https：／／www．kolas．go．kr／usr／intr／mas／MainUserScrin．do，2015－11－10 최종 방문））．
38）한국제품인정기구 홈페이지（http：／／152．99．46．28／kas／main．asp，2015－11－10 최종방문）
＜표 13＞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현황
（단위 ：개）

|  | $\prime$＇10 | ＇11 | ＇12 | ＇13 | ＇14 | 비 고 |
| :--- | :---: | :---: | :---: | :---: | :---: | :---: |
| 시험 <br> 기관 | 370 | 403 | 416 | 460 | 468 |  |

출처：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2015）

2．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입법례 분석
（1）제 23 조제 3 항과 관련된 입법방식
동조의 경우 실질적인 제정목적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 구를 개별부처의 시험검사기관 인정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이 를 반영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면，동조에 대한 평 가가 가능하다．현행 국가표준기본법령에 따를 때 관련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인정기구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국가표준기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이므로，국가기술표준원 을 활용하고 있는 법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3항을 해석하면＂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 를 활용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결국，＂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인증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 다．그렇게 보는 경우 동조항과 관련되는 입법례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인정기구 를 직접 활용하는 입법례를 보면，「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기본으로 하되 규제목적 또는 시험검사의 목적에 따 라 시험검사능력 등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붙이는 방향으로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국가기술표준원을 활 용하는 입법방식을 보면，아래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같이 「국가표 준기본법」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을 지정요 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국가표준기본법」의 내용을 활 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 시행령」과 같이 특별하게 「국가표준기본법」을 언급하지 않고，지 정요건을 새롭게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14＞인정조항 관련 타법령 입법례 비교

| 국가기술표준원을 활용하는 입법방식 | 국가기술표준원을 활용하지 않는 입법방식 |
| :---: | :---: |
| 담배사업법 시행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 4 조의 7 （화 재 방지 성능 인증기 관의 지정 요건）법 제 11 조의 6 제 2 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 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 32 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1）법 제24조제2항에 따 라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 하는 외부 전문기관（이하＂검증기 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관계 중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국가기술표준원을 활용하는 입법방식

국가기술표준원을 활용하지 않는 입법방식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에 따 라 인정기구로 지정된 국가기술표 준원（이하＂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 준 시험 방법（ISO 12863）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것
3．별표 2 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출 것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관 보에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다만，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정 된 검증기관（할당대상업체가 된 기 관은 제외한다）은 이 영에 따라 검 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 시설 • 장 비 등을 갖출 것
2．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 여 배상액 10 억원 이상의 책임보 험에 가입할 것
3．그 밖에 제 5 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개별법상 인정（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현황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인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개별적인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제현황을 검토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5＞「국가표준기본법」상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법령 현황

|  | 부처명 | 법령명 | 조문명 |
| :---: | :---: | :---: | :--- |
| 1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32조의4（지 정측 정기 관의 <br> 지정요건） |
| 2 | 국무총리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br>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배출량의 검증 및 검 <br> 징관의 지정 등） |

제 1 절「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제 23 조에 대한 입법평가

|  | 부처명 | 법령명 | 조문명 |
| :---: | :---: | :---: | :---: |
| 3 | 국무총리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 32 조(검증기관 등) |
| 4 | 국민안전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제34조(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
| 5 | 국토교통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 33 조(검사대행자 등) |
| 6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 $\begin{aligned} & \text {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 \\ & \text { 요건 등) } \end{aligned}$ |
| 7 | 국토교통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 제3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 8 | 국토교통부 | 항공법시행규칙 | 제201조(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
| 9 | 국토교통부 |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
| 10 |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 시행령 | 제 12 조의 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 11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 정기 관의 지정신청등) |
| 12 |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br> 특별법 시행령 |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
| 13 | 국토교통부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
| 14 | 기획재정부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 10 조(분석 및 시험) |
| 15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인삼산업법 시행령 | 제 5 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 인력 등) |
| 16 | $\begin{gathered} \text { 농림축산 } \\ \text { 식품부 } \end{gathered}$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br> 관한 법률 시행규칙 | $\begin{aligned} & \text {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 \\ & \text { 운영) } \end{aligned}$ |
| 17 | 농림축산 <br> 식품부 |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br>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 부처명 | 법령명 | 조문명 |
| :---: | :---: | :---: | :---: |
| 18 | 농림축산 <br> 식품부 | 동물 진단용 <br>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제6조(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
| 19 | 농림축산 식품부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
| 20 | 농림축산 <br> 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 기관) |
| 21 | 문화체육 <br> 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 제 10 조의 2 (안전 진단기 관의 지정 요건) |
| 22 | 문화체육 <br> 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
| 23 | 미래창조 과학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8 조(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제 11 조(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
| 24 | 방송통신 <br> 위원회 | 전파법 |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
| 25 | 보건복지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제6조(검사 • 측정기관) |
| 26 | 보건복지부 | 특수의료장비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6조의2(품 질관리검사기관) |
| 27 |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7 조의 2 (전문기관) |
| 28 | 원자력안전 <br> 위원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 15 조(전문기관의 지정기 준 등) |
| 29 | 해양수산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3조(수질검사기관 및 수 질검사 수수료등) |
| 30 | 해양수산부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
| 31 |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 제12조(검사대행기관) |
| 32 |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 16 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


|  | 부처명 | 법령명 | 조문명 |
| :---: | :---: | :---: | :--- |
| 33 | 해양수산부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br> 지정기준） |
| 34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 35 | 환경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br> 시행규칙 | 제1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br> 의 측정） |
| 36 | 환경부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br>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 <br> 관의 지정기준） |
| 37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 <br> 고 등） |
| 38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 제23조의2（토양관련 전문기 <br> 관의 종류 및 지정 등） |

3．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품에 대한 안전목 적，환경목적 등으로 각각의 개별법에서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2015년 9월을 기준으로 개별 부처 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제도는 모두 19 개 부처， 78 개 법령에 근거가 있다．그 중 「국가표준기본법」상의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 사기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그렇지 않은 법률의 통계 를 보면，아래 표와 같이 비슷한 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지정제도 관련법령에서의 인정기관 반영 현황

| 구 분 | 총리실 | 기재부 | 미래부 | 국토부 | 문체부 | 농림부 | 보복부 | 환경부 |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
| 반 영 <br> 법령수 | 0 | 1 | 0 | 0 | 0 | 0 | 2 | 12 | 0 |
| 미반영 <br> 법령수 | 2 | 1 | 1 | 9 | 2 | 6 | 2 | 5 | 1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구 분 | 해수부 | 국안처 | 방통위 | 원안위 | 공정위 | 조달청 | 산림청 | 기상청 | 계 |
| :---: | :---: | :---: | :---: | :---: | :---: | :---: | :---: | :---: | :---: |
| 반 영 <br> 법령수 | 3 | 3 | 0 | 0 | 1 | 1 | 0 | 1 | 37 |
| 미반영 <br> 법령수 | 5 | 1 | 1 | 1 | 0 | 0 | 1 | 0 | 41 |

출처：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2015）

한편 국회자료39）에 따르면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된 시험•검사 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37 개 법령에 따른 지정제도에 따른 전체 시 험•검사기관 268 개 중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 기관은 112 개로 전체의 $41.8 \%$ 에 해당한다． 40 ）이는 한국인정기구로부 터 인정된 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에서도 전적으로 한국인정기구 로부터 인정된 기관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 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2014년 12월 「국가표준기본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기관 지정 을 하는 경우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 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그러나 현행과 같은 체계에서 노력의무의 부과는 「국가표준기본법」의 목적을 실질적 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규범론적 평가의 결과처럼 현 행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원래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시행령 을 개정하고，더 명확하게는 법률에서부터 법제정취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동조항은 물론 「국가표준기본법」의 실효성 을 확보하는 방안이다．그러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표준

39）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5．4， 3 면．
40）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전체 시험기관 중 인정받은 시험기관의 비 중이 $92 \%$ 에 달하고，우리의 경우 $14.7 \%$ 에 그친다는 결과가 있다（산업연구원，『인정 제도 경쟁력 제고방안』，2015．8， 80 면）．

제 1 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한 입법평가

## 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이 필요하다．41）

41）한편으로는 현재 개별부처의 지정시험검사기관이 한국인정기구의 인정도 별도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되는 부분만큼 규제 혹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중복규제등의 해소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이 부분은 현행의 인증제도등의 정책방향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도 있는 부분이며，그렇게 보는 경우 법정책적 평가 방식으로도 평가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예컨대 국가기술표준원의 내부자료（2015）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지정시험검사기관과 한국인 정기구 시험기관의 중복이 상당수 있다．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와 관계없이 개별법 에서 중복적으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현재는 인증등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규제정비를 하고 있으나，더 나아가서는 적합성평가기관 인 정에 대한 규제정비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한 평가는 자료수집상의 한 계로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 지정번호 | 국립전파연구원（법정지정시험기관） | KOLAS 공인여부 |
| :---: | :---: | :---: | :---: |
| 1 | KR0002 | （주）한국 EMC 연구소 | $\bigcirc$（KT154） |
| 2 | KR0004 | 삼성전자（주）제 1 시험 기관 | － |
| 3 | KR0006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 | $\bigcirc$（KT005），○（KT006） |
| 4 | KR0007 | （주）에스케이테크 | $\bigcirc$（KT191） |
| 5 | KR0009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KT009） |
| 6 | KR0011 | 엘지전자（주）제품시험 연구소 | $\bigcirc$（KT112） |
| 7 | KR0013 | （주）원 텍 | （KT085） |
| 8 | KR0016 | 엘지전자（ᄌ주）디지털미디어규격시험소 | （KT254） |
| 9 | KR0017 | （주）BWS TECH | （KT174） |
| 10 | KR0019 | （주）에스테크 | $\bigcirc$（KT141） |
| 11 | KR0020 | 엘지에릭슨（ᄌ주） | － |
| 12 | KR0022 | （주）이티엘 | （KT137） |
| 13 | KR0023 | （주）한국기술연구소 | （KT160） |
| 14 | KR0024 | （주）한국규격품질원 | － |
| 15 | KR0025 | （주）씨티케이 | （KT119） |
| 16 | KR0026 | （주）넴코코리아 | （KT155） |
| 17 | KR0027 |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시험인증원 | （KT560） |
| 18 | KR0028 | 삼성전자（ᄌ주）제3시험기관 | － |
| 19 | KR003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KT011） |
| 20 | KR0032 | （ᄌ주）에이치시티 | $\bigcirc$（KT197） |
| 21 | KR0033 | 구미1대학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 （KT397） |
| 22 | KR0034 | （주디지털 이엠씨 | （ ${ }^{\text {（KT393）}}$ |
| 23 | KR0040 | （ᄌ주）이엠씨컴플라이언스 | （KT231） |
| 24 | KR0041 | （주）코스텍 | （KT232） |
| 25 | KR0042 | 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인증센터 | （KT134）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IV．비교법적 평가

1．독일의 인정시스템
（1）독일의 인정기구 통합과정
EU 는 단일시장 원칙 아래 기술장벽제거를 통한 자유무역 촉진，소 비자 보호 등을 위해 1국가 1 인정기구를 강제하고 있으며，EU는 이 원칙을 Regulation（EC）No．765／2008을 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하 고 있다．42）독일은 EU 원칙에 입각하여 「인정기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Akkreditierungsstelle：AkkStelleG）」제8조에 따라 사법상 법인 형태로 인정기구의 업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와 정부조직의 형태 로 연방인정청을 설립하는 형태 중 인정기구를 고민하였고，2009년 12

|  | 지정번호 | 국립전파연구원（법정지정시험기관） | KOLAS 공인여부 |
| :--- | :---: | :---: | :---: |
| 26 | KR0045 | （주）유씨에스 | （KT263） |
| 27 | KR0046 | （주）표준엔지니어링 | （KT619） |
| 28 | KR0049 | （주）엘티에이 | （KT551） |
| 29 | KR0074 | （주）씨에스텍 | （KT565） |
| 30 | KR0100 | （주）케이이에스 | （KT489） |
| 31 | KR0114 | 엘지전자（주）디스플레이규격시험소 | $\bigcirc$（KT267） |
| 32 | KR0115 | （주）충북테크노파크 | （KT391） |
| 33 | KR0139 | （주）이엠따블유 | － |
| 34 | KR0140 | （주）이엠씨랩스 | － |
| 35 | KR0144 | （주）스탠다드뱅크 | （KT558） |
| 36 | KR0146 | （주）지에스티에 | － |
| 37 | KR0148 | 중국삼성규격시험소 | － |
| 38 | KR0149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KT167） |
| 39 | KR0150 | 한국에스지에스（주） | （KT122）등 |
| 40 | KR0151 | 모본（주） | （KT238） |

42）이종영•백옥선，＂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중앙법학』 제 15 집 제 2 호，중앙 법학회，2013．6，79면．

월 21 일 하위법령인 「인정기구의 수탁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Beleihung der Akkreditierungsstelle nach dem Akkreditierungsstellen－ gesetz：AkkStelleG－Beleihungsverordnung）」에서 정부조직형태가 아니라 사 법형식으로 조직된 독일인정기구（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DAkkS） 를 설립하였다．43）

독일의 단일화 추진경과를 살펴보면，2009년 9월 민간인정기구인 독 일시험제도 인정시스템（Deutsches Akkreditierungssystem Prüfwesen：DAP）， 독일화학인정기구（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Chemie：DACH），인정기관 공동체（Trägergemeinschaft für Akkreditierung：TGA）등 다수가 독일인정 회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Akkreditierung mbH：DGA）로 통합하는 1 차 단일화가 진행되었고，2009년 10월 독일인정기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 월 독일인정회사（DGA），독일 검정서비스인정기구（Akkreditierungsstelle des Deutschen Kalibrierdiensts： DKD ）를 독일인정기구에 통합하는 2차 단 일화가 이루어졌다．44）그리고 2010년 1월 독일인정기구는 본격적으로 통합 인정기구업무를 개시하였다．45）

## （2）독일인정기구의 구성

독일인정기구는 독일 검정서비스인정기구와 대규모 독일 민간인정 기구인 독일 인정회사의 합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독일 정부가 $2 / 3$ ， 민간산업대표가 $1 / 3$ 을 차지하는 유한회사 형태의 인정기구로，독일인 정기구의 내부 조직체계는 Regulation（EC）No．765／2008에 따라 임의 및 강제인정 두 분야 모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46）

[^9]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독일인정기구는 「인정기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정업무와 그밖에 다른 인정활동을 업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인정기구의 구성원은 연방，일부 주 및 독일연방산업협회（Bundes－ 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e．V．：BDI）가 동일한 비율로 지분을 소유 하고 있다．${ }^{47)}$ 독일인정기구는 이사장，사원총회，감사위원회（Aufsichtsrat） 및 인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인정위원회（Akkreditierungsausschuss） 에는 산하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문위원회가 인정부여，인 정취소，정지 등에 관해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이다．48）
（3）독일인정기구의 활동
독일인정기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인정기구에 관한 법률」 과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인정기구의 수탁에 관한 시행령」의 적용 을 받는다．인정활동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다．49）연방정 부의 관리 및 감독은 인정결과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기획 되었고，기술적 깊이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등은 기존기준이 적용되고 있다．50）독일인정기구의 활동은 크게 고권적 활동51）과 비고권적 활동 으로 구분되는데，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 에서 독일인정기구가 수행하는 인정절차는 결과적으로 비고권적 활동 에 해당한다．52）「인정기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인정절차 는 신청절차，심사절차，인정발급절차 및 감독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47）이종영•백옥선，＂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중앙법학』 제 15 집 제 2 호，중앙법학회，2013．6，88면．
48）http：／／www．dakks．de／sites／default／files／sharedpics／DAkkS－Abbildungen／42．1＿sd＿003＿organi sationsplan＿der＿dakks＿mit＿fachbereichen＿20151012．pdf（2015－11－10 최종방문）．
49）Gesetz über die Akkreditierungsstelle（AkkStelleG）§9 Aufsicht．
50）강병구，『단일인정기구 출범에 따른 KOLAS 중심의 통합인정제도의 효율화 연구』，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2．8，30면．
51）「인정기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인정조항（§ 1 Akkreditierung）에 따르면 인정은 인 정기구를 통하여 수행되는 연방의 고권적 활동이다．
52）이종영 • 백옥선，＂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중앙법학』제 15 집 제 2 호， 중앙법학회，2013．6，90면．

산업연구원의 2015년 연구53）에 의하면 독일인정기구는 2015년 8월 기 준으로 4,002 개 기관이 인정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으며，인정받은 기 관에는 교정기구，시험소，표준물질생산자，메디컬 시험소，검사기구， 제품인증기관，인력인증기관，경영시스템인증기관，숙련도검사기관，온 실가스 등 검증기구를 인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영국의 인정시스템
（1）영국인정기구 단일화의 의의
영국은 이원화되어 있었던 기관을 통합하여 인정기구를 단일화하였는 데，영국은 EU 의 Regulation（EC）No．765／2008 제정 이전에 인정기구를 단일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1985년에 설립된 시험기관 인정기구인 영 국 계량 인정 서비스 기구（National Measurement Accreditation Service： NAMAS）와 1985년에 설립된 영국 인증기관 인정기구（National Accredi－ tation Council for Certification Bodies：NACCB）를 통합하여 1995년에 영국인정기구（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UKAS）를 설립하였 으며，54）영국인정기구는 Accreditation Regulations 2009（SI No 3155／2009） 와 EU Regulation（EC）765／2008에 의해 국가인정기구로서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55）
（2）영국인정기구의 활동
영국인정기구는 유럽인정협회（EA，European Cooperation on Accreditation） 는 물론 인정에 관한 국제기구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있 으며，56）국제표준에의 부합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받고 있다．영국인정

53）산업연구원，『인정제도 경쟁력 제고방안』，2015．8．
54）이은숙，국내 적합성 평가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18 면．
55）http：／／www．ukas．com／about／our－structure／（2015－11－10 최종방문）．
56）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

기구는 인증, 시험, 검사 및 교정기관에 대한 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57)}$ 영국인정기구는 주주대신 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구매자, 사용자 및 품질 전문가 등 인정에 관련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58) 영국 인정기구는 정부에서 출자한 비영리 유한회사로 정부(기업혁신기술부) 와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하에 운영되고 있다.59) 이 양해각서에 따라 영국인정기구는 영국 유일의 인정기관으로서의 지위 가 승인되며, 수익사업을 하지만 재투자를 위해 사용하고 그 이익은 새로운 인정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60)}$
(3) 영국인정기구의 구조 및 역할

영국인정기구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수시로 개최되는 기술위원회 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여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인정분야는 시험기 관 인정(Laboratory accreditation(ISO/IEC 17025)), 의료시험기관 인정(Medical Laboratory accreditation(ISO 15189)), 임상병리인정(Clinical Pathology Accreditation), 진단영상인정(Diagnostic Imaging accreditation(ISAS)), 생 리학서비스 인정(Physiological Services accreditation(IQIPS)), 인증기관 인 정(Certification body accreditation), 검사기관 인정(Inspection body accreditation),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Proficiency Testing Scheme Provider accreditation), 표준물질 생산자 인정(Reference Material Producer accreditation), 승인기관 인정(Notified Body accreditation), Apply for accreditation이다. ${ }^{61)}$

[^10]영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2013년 기준 총 1,966 社로，영 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교정，검사，인증분야 적합성평가 기관의 매 출은 총 9조 4，620억원（2013년 기준），영국인정기구의 총 매출은 2013 년 기준 361 억원으로 조사되었다．${ }^{62)}$

3．중국의 인정시스템
（1）중국의 인증제도 통합배경
중국은 국무원 산하의 각기 다른 정부부처가 인정업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복수의 인정시스템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이러한 배경 에서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에 대한 중복인정에 따른 고비용 및 비효율 적 운영은 물론이고，복수인정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정요건이 상 이하게 되어 인정업무의 일관성이 저하되었으며，더 나아가 인정제도 자체도 경쟁으로 인해 인정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 이 나타나면서 통합필요성이 제기되었다．${ }^{63)}$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이전까지 운영하고 있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여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를 도입하고， 2002 년부터 인정기구 통합을 추진하여 국무원 소속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가 부처별로 운영되던 8개 인정 기구를 2007년 3월 아래 표와 같이 2차례의 통합과정을 거쳐 범부처 가 참여하는 단일인정기구인 중국인정기구（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CNAS）로 통합하였다．64）

62）서경미，영국 UKAS 인정시스템의 파급효과－시장분석과 품질인프라를 중심으로－， KSA Policy Study 010 Global 동향분석 2015－1호，한국표준협회， 2015.2 6－7면．
63）강병구，『단일인정기구 출범에 따른 KOLAS 중심의 통합인정제도의 효율화 연구』，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2．8，50면．
64）강병구，『단일인정기구 출범에 따른 KOLAS 중심의 통합인정제도의 효율화 연구』，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2．8，54－55면．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표 $17>$ 중국의 인정기구 통합과정

| 기존조직 |  | $\begin{gathered} 1 \text { 차 통합 } \\ (2002 \sim 2004) \end{gathered}$ |  | 2차 통합（2006） |  |
| :---: | :---: | :---: | :---: | :---: | :---: |
| 소관부처 | 인정기구 | 통합전 | 통합후 | 통합전 | 통합완료 |
| 중국국가 <br> 품질기술 <br> 감독국 | CNACR（QMS） <br> CNACL（시험） <br> $\operatorname{CNACP}$（제품인증） | CNACR <br> CNACP |  | CNAB |  |
| $\begin{gathered} \text { 중국국가 } \\ \text { 출입국 } \end{gathered}$ <br> 검험검역국 | $\begin{gathered} \text { CCIBLAC(시험) } \\ \text { CNAB(인증) } \end{gathered}$ | CACEB <br> CACOB CNAB | CNAB |  | CNAS |
| 환경부 | $\begin{aligned} & \mathrm{CACEB}(\mathrm{EMS}) \\ & \mathrm{CACOB}(\text { 식품 }) \end{aligned}$ |  |  |  |  |
| 국가안전 <br> 생산감독 <br> 관리총국 | CNASC （작업안전） | $\begin{gathered} \text { CNACL } \\ \text { CCIBLAC } \end{gathered}$ | CNAL | CNAL |  |

출처：강병구（2012）
（2）중국인정기구의 구조

중국인정기구의 법적 설립근거는 2003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인 증인정조례이며，국무원 소속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QSIQ）65）및 CNCA 가 인 정기구를 관리감독하고 있다．66）

65）동기관은 표준화，품질감독，안전검사，수출입검사•검역，측정 및 계량업무를 총 괄한다．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www．aqsiq．gov．cn／zjgk／201511／ t20151110＿453546．htm 2015－11－11 최종방문）．
66）강병구，『단일인정기구 출범에 따른 KOLAS 중심의 통합인정제도의 효율화 연구』，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2．8，47－79면．
［그림 2］중국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조


출처：산업연구원（2015）
중국인정기구는 이사회（Board），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인 증기관에 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Certification Body）， 시험소에 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Laboratory），검사기 관에 대한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Inspection Body），평가 위원회，소청위원회（Appeal Handling Committee），최종사용자 위원회（End－ User Committee），사무국（Secretariat）으로 이루어져 있다．67）

67）강병구，『단일인정기구 출범에 따른 KOLAS 중심의 통합인정제도의 효율화 연구』，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2．8，52면．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3）중국인정기구의 실적현황

중국인정기구의 인정범위는 인증기관，그 외 시험기관，검사기관，표 준물질생산기관，숙련도시험 제공기관 등이 포함된다．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중국인정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135 개 인증기관을 인정하였 다． 5,547 개의 시험소를 포함하여 6,609 개의 시험기관을 인정하고 있고， 교정기관은 768 개，의료시험소 184 개，바이오 안전시험소 63 개，표준물 질생산기관 11 개，숙련도시험 제공기관 36 개，검사기관은 397 개이다．${ }^{68)}$

4．일본의 인정시스템
（1）일본 시험기관 인정 기구 개관
1997년 공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일본 국립 시험소인정제도（Japan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JNLA）가 창설되었으며，제도창설 초 기에는 경제산업성이 시험소 인정업무를 실시하였다가，2000년부터 인 정업무가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인정센터로 이관되었다．${ }^{69)}$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인정센터（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IA Ja－ $\mathrm{pan})$ 에서 실시하는 적합성인정은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와 2000 년，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와는 1998년에 상 호인정협정（MRA）을 맺었다．70）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A Japan 이외에 도 일본은 민간분야의 인정기관인 일본적합성인정협회（JAB），전자 환경시 험소 인정센터（VLAC）을 더 두고 있다．일본 전체의 효율적인 시험소 인 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시험소 인정기관이 협력•연계할 수 있는 시험 소인정기관연락회（試験所認定機関連絡会，JLAC）를 두고 있으며，71）현행 일본의 시험기관 인정범위에 관한 도식도는 아래 표와 같다．

[^11]＜표 18＞일본의 시험소 인정기관 및 업무범위

| 인정기관 이정범위 | NITE인정센터 <br> （IAJapan） | 일본적합성인정협회 <br> （JAB） | 전자환경시험소인정 센터（VLAC） |
| :---: | :---: | :---: | :---: |
| 법인형태 | 독립행정법인 | 공익재단법인 | 일 반법인（주식회사） |
| QMS $/$ EMS |  | $\bigcirc$ |  |
| 요원인증 |  | $\bigcirc$ |  |
| 제품인증 |  | $\bigcirc$ |  |
| 시험소 | $\bigcirc$ | $\bigcirc$ | （EMC） |
| 교정기관 | － | － |  |
| 검사기관 |  | $\bigcirc$ |  |

출처：산업연구원（2015）72）
（2）국가소속의 인정기구（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 기반기구 인증센터（IA Japan））

2002년 4월 일본 국제인정센터（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IAJa－ pan）가 설립되었으며，일본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 기반기구（NITE） 소속의 센터이다．주로 시험•교정기관，제품인증기관，표준물질생산 자에 대한 인정 및 특정계량증명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인정기관이다．${ }^{73)}$ NITE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인정프로그램 중 JCSS，JNLA，ASNITE에 대해서는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아시 아－태평양 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의 상호 승인 협정74）이 인정된다．

72）산업연구원，『인정제도 경쟁력 제고방안』，2015．8，48면＜표 III－15＞수정보완．
73）http：／／www．nite．go．jp／iajapan／index．html
74）국제 상호 승인 회원 목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것은，http：／／ilac．org／ilac－membership／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표 19> IAJapan 인정 프로그램

| 인정 기구 | 인정제도 | 인정 세부범위 | $\begin{gathered} \text { ILACl } \\ \text { APLAC } \\ \text { MRA 대상 } \end{gathered}$ | 인정기준 | $\begin{aligned} & \text { 인정받은 } \\ & \text { 기관 수 } \end{aligned}$ |
| :---: | :---: | :---: | :---: | :---: | :---: |
| IAJapan | JNLA （시험기관 인정）${ }^{75)}$ |  | O | ISO／IEC 17025（시험기관） | 54 |
|  | JCSS （교정기관 인정）${ }^{76 \text { ）}}$ |  |  | ISO／IEC 17025（교정기관） | 73 |
|  | MLAP（특정계량증명기관 지정）77） |  | X | 관계 고시 | 120 |
|  | ASNITE ${ }^{78)}$ | 표준 물질 생산자 인정 | O | ISO Guide34（＊1）및 ISO／IEC 17025（＊2） | 0 |
|  |  | 국가 계량 표준 연구소（NMI）인정 |  | ISO／IEC 17025（＊2） 다만 표준 물질은 상기를 준용 | 5 |

members－by－economy／（ILAC Membership）；https：／／www．aplac．org／aplac＿mra．html（AP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MRA））참조，2015－11－13 최종방문）．
75）JNLA（Japan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System，工業標準化法試験事業者登録制度）는 공업표준화법（工業標準化法）에 의거 제품시험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하도 록 하였고，2004년 공업표준화법 개정으로 모든 광공업품에 관련된 JIS시험 방법이 기존의 인정에서 등록제도로 변경되었다（http：／／www．jisc．go．jp／acc／examination．html， 2015－11－13 최종방문）．
76）JCSS（Japan Calibration Service System，計量法校正事業者登録制度）은 계량법（計量法）에 기초한 교정 사업자 등록제도임．
77）MLAP（Specified Measurement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工業標準化法試験事業者登録制度）은 계량법에 기초한 특정 계량 증명 사업자 인정 제도임．
78）ASNITE（Accreditation System of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製品評価技術基盤機構認定制度）는 제품 평가 기술기반기구 인정제도임．

제 1 절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대한 입법평가

| 인정 기구 | 인정제도 | 인정 세부범위 | ILAC <br> APLAC <br> MRA 대상 | 인정기준 | 인정받은 <br> 기관 수 |
| :---: | :---: | :---: | :---: | :---: | :---: |
|  |  | （JCSS，RM，NMI <br> 이외의）교정기관 인정 |  | $\begin{aligned} & \text { ISO/IEC } 17025 \\ & \text { (교정 기관)(*2) } \end{aligned}$ | 1 |
|  |  | （JNLA이외의） <br> 시험기관 인정 |  | $\begin{aligned} & \text { ISO/IEC } 17025 \\ & (\text { 시험기관)(*2) } \end{aligned}$ | 12 |
|  |  | IT보안 평가기관 인정 |  | ISO／IEC 17025 （시험기관）（＊2） | 3 |
|  |  | 제품인증기관 인정 | X | $\begin{gathered} \text { ISO/IEC Guide65(*3) } \\ (\text { ISO/IEC17025)(*2) } \end{gathered}$ | 0 |

＊1 JIS Q 0034 ： 1997 표준물질의 생산기관을 위한 품질 시스템 지침
＊2 JIS Q 17025 ： 200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
＊3 JIS Q 0065 ： 1997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출처：NITE 홈페이지79）
（3）민간 인정기구

1）공익재단법인 적합성인정협회（JAB）
일본의 적합성인정협회（JAB）는 민간 비영리 단체로서 공익재단법인80） 이며，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적합성평가제도 산하의 모든 인정（인증） 관련업무를 하고 있다．81）적합성인정협회는 1993년 11월 1일＂품질시 스템 등록을 위한 일본인정위원회（The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Qua－ lity System Registration）＂라는 이름으로 일본경제연합위원회의 후원을 받

79）http：／／www．nite．go．jp／iajapan／aboutus／ippan／program．html（2015－11－13 최종방문）．
80）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하여 내각부의 공익인정을 받아 2010년 7월 1 일부터 공익재단법인으로 발족되었다．주무관청은 내각부（2010년 6월 이전에는 경 제산업성，국토교통성（일본 민법 제34조））．
81）2007년 7월 기준 일본적합성인정협회의 인정실적은 시험소 187건，교정기관 20 건，검사기관 2건 등에 달한다．http：／／www．jab．or．jp／about／basic（2015－11－13，최종방문）

아 35 개 산업 단체의 지원을 위한 일본 산업규격위원회로，품질경영 시스템 등록을 위한 인정기구처럼 설립되었다가，1996년 6월 적합성 인정협회는 JAB 는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시기에＂일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인증위원회（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 ment：日本適合性認定協会）＂로 변경하였다．${ }^{82)}$

적합성인정협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동협회는＂민간비영리단체에 의한 인정기관에서 출발하여 1997년 이후 전기시험，전자파 적합성시 험，화학시험기계시험，일반 교정 등의 분야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 （ILAC）의 상호승인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으며，일본 산업표준（JIS）및 국제표준 관련활동으로，일본의 적합성 평가제도의 발전과 설립，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체계（MRA）를 발전시키고 설립함으로써 일본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일본적합성인정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소인정은＇시험소＇，＇교정기관＇，＇임상검사실＇을 대 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인정업무를 수행＂한다．83）

## ＜표 20＞일본적합성인정협회의 주요업무

```
- JIS Q 17021에 의한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인정 및 등록
    -품질관리시스템(JIS Q 9001), 환경관리시스템(JIS Q 14001)
    - 의료기기(JIS Q 13485)
    - 항공우주(JIS Q 9100)
    - 전기공작물용접(JIS Z 3400)
    - 전기통신(TL 9000)
    - 정보보안관리시스템(JIS Q 27001)
    - 식품안전관리시스템(ISO 22000)
    - 에너지관리시스템(ISO 50001)
```

82）구제길 외，『정보통신 통합인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미래창조과학부 연 구보고서，2007．11，122면．
83）http：／／www．jab．or．jp／en／accredited＿boadies／（2015－11－14，최종방문）．

```
- JIS Q 17024에 의한 요원 인증 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0065에 의한 제품인증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14065에 의한 온실 효과 가스 타당성 확인 • 검증 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17025에 의한 시험소 • 교정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17020 에 의한 검사기관의 인정 및 등록
- JIS Q 0034 및 JIS Q 17025에 의한 표준물질생산자의 인정 및 등록
- ISO 15189 에 의한 임상검사실의 인정 및 등록
- MRA법에 근거하는 지정 조사 업무(나라의 대행 업무)
- 적합 조직(품질관리시스템(JIS Q 9001)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공표
- 해외 인정기관과의 상호 승인의 추진
- 조사 및 연구 인정 • 인증과 관련되는 불평등에의 대응 사업의 보급 계발 활
    동•홍보 활동
-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

출처：산업연구원（2015）
2）전자환경시험소 인정센터（VLAC）
전자환경시험소인정센터（Voluntary EMC Laboratory Accreditation Center：
$\mathrm{VLAC})$ 는 정보처리장치 등 민간기관인 전자파자율규제협의회 $(\mathrm{VCCI})$ 가 1999년 설립하였으며 전자퐈양립성（EMC），소음，통신기 성능，소비전 력 및 전기안전 시험을 치르는 시험소에 대한 인정기관이다．84） 1998 년 국제적 시험소 인정의 흐름에 정합시키기 위해 $\mathrm{ISO} / \mathrm{IEC}$ 가이드 58 （교정 기관 및 시험소의 인정 제도－운영 및 승인에 관한 일반 요구 사 항）에 근거하는 시험소 인정기관의 운용 및 $\mathrm{ISO} / \mathrm{IEC}$ 가이드 25 （교정 기 관 및 시험소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에 근거하는 전자 환경 시험소 심사 인정을 수행하는 ‘VCCI 시험소 인정센터＇를 VCCI 내에 설 립했다．85）이후 VCCI 시험소 인정 센터는 전자파자율규제협의회（VCCI）

84）강병구，『단일인정기구 출범에 따른 KOLAS 중심의 통합인정제도의 효율화 연구』，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2．8，33－34면．
85）써티코리아，『MRA에 대비한 국내 정보통신 지정시험기관 관리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04．12，123－124면．

에서 분리•독립해 'VLAC(주식회사 전자환경시험소인정센터)'로 변경 되었다. 인정센터의 사업내용으로는 국제기준에 근거한 전자파적합성 시험소의 인정,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전자파적합성 에 관한 기술•관리 교육,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출판 및 전자파적합성 측정설비의 심사•등록사업 수탁 등이다.86)

## 5. 평가결과

인정기구에 대한 몇 개국을 검토한 결과, EU 회원국은 1 국가 1 인정 기구에 관한 EC 결정에 따라 자국의 인정기구를 의무적으로 단일화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부처별로 운영하던 8 개의 인정기구를 중 국인정기구로 통합하고 있고, 다만 일본의 경우 4 개의 인정기구가 있 으나, 정부차원의 인정은 1 개이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정기구는 개별법상 제도가 포함된 법률의 관할 중 앙행정기관이 되므로, 10 개 이상의 인정기구를 두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적합성평가체제를 개편한 국가들의 이전 현황과 같이 다수의 인정기구로 인한 비효율성 및 시험인증기관의 신 뢰성 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일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복인정 방지를 통한 인정 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공공서비스 개념 강화 등을 중시하고 있 는 반면, 일본처럼 복수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인정기구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인정대상을 시험검사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인정기구를 설립•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6) http://www.vlac.co.jp/conform/index_conform.html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2015년 11월 14 최종방문).

## ＜표 21＞인정기구 운영주체 및 수의 장단점 비교

|  | 정 부 |  | 민 간 |  |
| :---: | :---: | :---: | :---: | :---: |
|  | 단 일 | 복 수 | 단 일 | 복 수 |
| $\begin{aligned} & \text { 장 } \\ & \text { 점 } \end{aligned}$ | －제도일관성 확보 <br> －국 가 정 책 연 계 용이 <br> －글로벌시장 대 응에 규제 부처 간 협업적 공동 대응 용이 －국가 단일 브랜 드로 글로벌 경 쟁력 확보 －시 험 인 증시 장 대형화／융합화 로 시험인증 산 업 육성 | －전문성확보 용이 | －국가 단일 브랜 <br> 드로 글로벌 경 <br> 쟁력 확보 <br> －제도운영 일관성 <br> －전문인력 확보 용이 <br> －시험변화 신속 대응 용이 | －분야별 전문성 확보 용이 |
| $\begin{aligned} & \text { 단 } \\ & \text { 점 } \end{aligned}$ | －전문성 취약 <br> －신속대응 미약 | －부처간 중복 인 정으로 기업 부 담 증가 <br> －인정제도간 인정 기준 등 상이로 시장 혼란 초래 －인정 거버넌스 분산으로 글로 벌 시장 공동 대 응 한계 <br> －인정기구간 경 쟁유발 가능성 상존 | －글로벌 시장 대 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 미흡 <br> －상업적 운영으 로 인증비용 상 승 우려 | －중 복인 정으로 기업부담 증가 －거버넌스 분산 으로 글로벌 대 응 한계 <br> －인정제도간 인 정기준 상이 등 시장혼란 초래 －인정기구간 상 업적 경쟁 증가 로 인정 품질 저 하 우려 |

출처：산업연구원（2015）${ }^{87)}$

87）산업연구원，『인정제도 경쟁력 제고방안』，2015．8， 24 면．

복수인정기구 운영에 따라 일본은 독일의 독일인정기구와 유사하게 일본적합성인정협회를 설립하여，각 인정기구가 지속적으로 공통과제 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그 산하에 시험소 인정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검토하는 시험소 인정기관 연락회를 두고 있 다．일본의 복수인정기구제도의 경우 과거 독일에서의 인정제도와 유 사하게 경쟁요소에 의한 장점보다 중복적 비효율성 측면에서 단점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가별 1 국가 1 인정기구 추세에 역행하여 부처별로 독자적인 인정기구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영세한 인정기구들이 국제 인정환경 변화나 국제인정기구 활동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 고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이러한 영세성과 비효율성 （중복성）은 전체적인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 나의 국가가 단일한 인정기구를 두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 볼 수 있 으며，각 국가는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표준제도의 통일과 개량，국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서도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문제는 국내적 상황만을 고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현재 유럽은 물론 중국도 인정기관의 통합을 통해 중 복인정을 방지하고，적합성평가체제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인정기 관이 상이한 경우 무엇보다도 인정요건이 상이하고，시험검사기관의 수 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인정을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 우 인정요건도 시험검사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므 로 효율적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그 밖에도 인정기구를 분산하여 두 는 경우 동일 제품과 관련하여 중복시험과 중복인증이 발생할 수도 있 고，부실인증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행의「국가표준기본법」은 비교법적으로 표준제도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규정된 측면이 강하다．적어도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인정기구를 정부로 할지 민간에서 할지，인정기구를 단일화할 지 복수체제를 유지할지는 모두 정책적 판단사항이다．현재 외국의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은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 신뢰 성，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고，규제정책적 방향 역시 인증체제 통합 등 인정시스템 역시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 다．현재 적합성평가시스템과 관련된 법률과 「국가표준기본법」과의 관계에서，동법의 중요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 로 정책적으로 중앙행정기관간의 합의를 통한 「국가표준기본법」상 인 정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제 2 절 「국가표준기본법」제 22 조에 대한 입법평가

I．평가대상조항 개관

| 적용대상 |  |
| :---: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조항연혁 |  |
| 1999．2．8．제정당시부터 존재 <br> 2000．2．3．개정시 협의조항의 내용 및 절차 개정 <br> 2009．4．1．개정시 인증제도도입시 통보•협의대상 현행처럼 개정 |  |
| 규정내용 |  |
| 제 22 조（제품인증등）（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등록• 인정 • 심사 • 검사 • 신고 • 형식승인 등（이하＂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를 도입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 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br> （2）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규범론적 평가

1．제품인증등의 제도도입시 통보•협의 조항의 의의
（1）「국가표준기본법」제 22 조의 내용
「국가표준기본법」은 제 22 조에서 제품인증등의 제도도입과 관련된 절 차조항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등록•인정•심사•검사•신고•형식승 인 등（이하＂제품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는 제품인증이나 검정，등록， 검사，형식승인 등에 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나，제품인증등을 의무적인 방식으로 도입하거나，인증 마크 표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법령 제•개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 입법연혁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는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조항으로서，내 용상의 개정은 아래와 같이 두 번 이루어졌다．제정당시 제 22 조제 1 항 은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 원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2000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 부칙조항을 통해 동조의 사전협의 가 통보제도로 변경되었다．이후 2013년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 해 일반적인 인증제도 도입시에는 여전히 통보제도를 유지하되，강제 인증이나 강제인증마크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 는 협의를 하도록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였다．

한편，2000년 2월 3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2항은 종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품 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던 것 에서，이에 대한 판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도 록 부칙조항을 통해 개정하였다．「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취지에서는 협의조항에서 통보조항으로 변경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여러 가지 개정상황에 미루어보건대 환경성적 표지의 인증제도에서 인증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의 협의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절차를 개정 한 것으로 보인다．

| 국가표준기본법 <br> ［1999．2．8，제정］ | 국가표준기본법 ［2000．2．3，타법개정］ | 국가표준기본법 ［2009．4．1，일부개정］ |
| :---: | :---: | :---: |
| 제22조（제품인증）（1）관 련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22조（제품인증）（1）관 련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제품인증등）（1）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품에 대한 인증•검정• 등록•인정•심사•검 사－신고 • 형식승인 등（이하＂인증등＂이라 한 다）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다만，법령을 제정 하거나 개정하여 제품 에 대한 인증등을 반 드시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 하도록 하려면 그 내 용에 관하여 지식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국가표준기본법 <br> ［1999．2．8，제정］ | 국가표준기본법 ［2000．2．3，타법개정］ | $\begin{gathered} \text { 국가표준기본법 } \\ \text { [2009.4.1, 일부개정] } \end{gathered}$ |
| :---: | :---: | :---: |
| （2）산업자원부장관은 새 로운 제품인증제도가 국 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2）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새로운 제품 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 （2）관련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새로운 제품 인증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고 그 결과 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2．법령 제•개정시 통보•협의의무 관련 입법례 분석
（1）제•개정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방식
법령의 제•개정시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의 법률은 아래와 같다．관련 입법례를 검토해보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법」과 「지식재산 기본법」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에 동법 상의 조정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더 나아가 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 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결국 실질적으로는 통보의 절차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22＞법령제•개정시 통보방식 입법례

| 법 률 | 조문내용 |
| :---: | :---: |
| 우정사업 | 제 7 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 • 운영）（1）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br> 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 2 조제 1 항 • 제 4 항， |
| 운영에 관한 | 제 3 조제 1 항 및 제 4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br> 특례법 <br>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법 률 | 조문내용 |
| :---: | :---: |
|  | (2)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br> (3)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 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br> (4) 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지속가능 <br> 발전 법 | 제 11 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1) 중앙 행정기관의 장 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 <br> (2)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 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 계획을 수립 •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 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br> (4)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br> (5)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 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br> (6)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7)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 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법 률 | 조문내용 |
| :---: | :---: |
|  | 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 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br> (8)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식재산 <br> 기본법 | 제 13 조(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통보) (1) 중앙 행정기관 의 장과 시•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br> (2) 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 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br> (3) 제 1 항의 통보 및 제 2 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개정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방식

법령 제•개정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방식의 입법례는 통보 에 관한 입법례 보다는 그 수가 많다.
<표 23> 법령제•개정시 협의방식 입법례

| 법 률 | 조문내용 |
| :---: | :---: |
| 건설폐기물의 | 제 3 ㅈㅈ(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 <br> 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인에 법을 다른 <br> 관한 법률 |
|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br> 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법 률 | 조문내용 |
| :---: | :---: |
|  |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 17 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국어기본법 | 제 25 조（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국적법 | 제 11 조의 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1）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는 대한민국 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br> （2）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br> （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br> 관한 특별조치법 | 제 42 조（법령 제정•개정 시의 협의）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의 완화와 관련되는 사항，의 무고용자의 수•자격 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대외무역법 | 제 6 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1）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r> （2）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 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 등（이하＂수출•수입요령＂이 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수입요령의 조정을 요 청할 수 있다．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법 률 | 조문내용 |
| :---: | :--- |
|  | 제 7 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공정시험기준과 <br>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br> 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
| 환경분야 |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
| 등에 관한 | 한다． <br> 법률 |
|  | 1．제6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br> 2．「산업표준화법」 제 12 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 <br> 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한다） |

## 3．평가결과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1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 검정 • 등록 • 인정 • 심사 • 검사 • 신고 • 형식승인 등의 제도도입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강제제도의 경우에는 법령 제정 및 개정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 11 조제 1 항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22 조제 1 항 단서는 그 자체 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다만，「국가표준기본법」 제 22 조 제 1 항 본문의 경우에는 임의인증과 관련하여서는 통보를 하도록 정하 고 있는 바，임의인증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통보를 하여야 함은 물론，「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라 협의의 대상이 되므로 협의절차도 거쳐야 한다．

제품인증제도의 경우 강제인증등이 아닌 경우에도 임의인증의 활성 화를 위해 법률에 인증의 근거를 두는 것이 보통이고，법령에 임의인 증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강제인증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표준기본법」은 인증의 유형별로 통보나 협의를 구분하고 있으 나，「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해서는 모두 협의의 대상이 되므로，현 행과 같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법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 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 11 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1）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 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지방자 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법」제 165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2）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법 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 가 있는 경우
（3）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 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推計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4）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 일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다만，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 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 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5）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의견 조정，그 밖에 정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6）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 계법，제 12 조의 2 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 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III．법정책적 평가

## 1．현행법체계하에서의 제품인증 관련 법률 현황

현행 법체계를 검토해보면，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 해 혹은 환경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해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인증은 각 부처의 소관 개별법령에 인증•검 정 •형식승인•검사•허가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 다．이에 대한 규정방식은 반드시 제품인증등을 받아야 제품을 출시 혹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인증과 제품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을 부여하는 방식의 임의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부처별 제품강제인증 현황
현재 법정의무로 도입되어 있는 제품인증은 13 개 부처에서 총 51 개 분야의 제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88）강제인증의 이름은 인증•검 사•형식승인 등 다양하게 붙여져 있으며，이들 모두를 「국가표준기 본법」은 적합성평가체제 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2조단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들이다．

88）현재 법정강제의무로 규정된 인증제도 전체 현황은 부록을 참조．
<표 24> 제품강제인증 현황

| 소관부처 | 관련법률 | 인증등의 대상 |
| :---: | :---: | :---: |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  |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
| 국민안전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탱크안전성능검사 |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용품형식승인 |
| 국토교통부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형식승인 |
|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측량기기의 검사 |
|  | 주택법 |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
|  | 주차장법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
|  | 항공법 | 항공기 형식증명 |
|  |  | 감항증명 |
|  |  |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인증 |
|  | 하천법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
|  | 철도안전 법 | 철도차량형식승인 |
|  | 자동차관리법 | 택시미터의 검정 |
|  | 철도안전 법 | 철도용품형식승인 |
| 기상청 | 기상관측표준화법 | 기상측기의 검정 |
| 농림축산 식품부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확인 |
|  |  | 농업기계의 검정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소관부처 | 관련법률 | 인증등의 대상 |
| :---: | :---: | :---: |
| 문화체육 관광부 | 관광진흥법 | 유기 시설，기구의 안전성 검사 |
| 미래창조 과학부 | 전파법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 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
| 산림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
| 산업통상 <br> 자원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
|  | 석탄산업법 | 석탄분야 품질검사 |
|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  |  | 가스용품검사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열사용기자재검사 |
|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석유분야 품질검사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공산품（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어 린이보호포장，안전，품질표시） |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항공우주 분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확인） |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 준 규격 인정 |
|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허가 |
|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 진흥법 | 소금품질검사 |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및 검정 |


| 소관부처 | 관련법률 | 인증등의 대상 |
| :---: | :---: | :---: |
|  | 선박안전법 | 컨테이너 형식승인, 검정 |
|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 사/검정 |
|  | 선박안전 법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 승인•검정 |
|  | 항만법 |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
|  | 선박안전 법 | 선박의 검사 |
| 행정자치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검사 |
|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 해엔진인증 |
|  | 먹는물관리법 | 정수기 품질검사 |
|  | 대기환경보전법 | 제작자동차 인증, 검사 및 정밀검 사(배출가스) |
|  | 자원의 절약과 <br>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 등급 인증 |
|  | 하수도법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
|  |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

(2) 부처별 제품임의인증 현황

현재 임의로 도입되어 있는 제품관련 인증제도는 13 개 부처에 걸쳐 약 50개 정도가 있다.89) 현재 임의인증의 경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 로 부처간의 지속적인 통폐합 과정에 있고, 시험검사결과간의 상호인 증 등을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89) 현재 법정임의제도로 규정된 인증제도 현황은 부록으로 붙인다.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표 25> 제품임의인증 현황

| 소관부처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 :---: | :---: | :---: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
| 국민안전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인증 |
|  |  |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
|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검정 |
|  |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
| 국토교통부 | 건설폐기물의 <br>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품질인증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 품질인증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
| 농림축산 <br> 식품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신기술농업기계지정 |
|  | 식품산업진흥법 | 전통식품품질인증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술품질인증 |
|  | 축산법 | 가축의 검정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유기가공식품인증 |
|  |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
| 농촌진흥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br>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


| 소관부처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 :---: | :---: | :---: |
| 문화체육 <br> 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상품 품질인증 |
| 미래창조 과학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제17조) | ICT 융합품질인증 |
| 보건복지부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 고령친화 우수제품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생산품 인증 |
| 산림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제품품질 인증 |
|  |  |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
|  |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산림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
| 산업통상 자원부 |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민간전환) 신뢰성인증 |
|  | 산업융합 촉진법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br>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  | 에너지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  | 유통산업발전법 | 물류표준설비인증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제품 등 적합성 인증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소관부처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 :---: | :---: | :---: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지능형로봇품질인증 |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재제조제품품질인증(REMAN마크) |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성능인증 |
|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품질인증 |
|  | 소금산업 진흥법 | 우수천일염인증 |
|  |  | 친환경천일염 인증 |
|  |  | 수산특산물품질인증 |
|  | 식품산업진흥법 | 전통식품 품질인증 |
|  | 어선법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br>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무항생제수산물 |
|  |  | 유기가공식품 |
|  |  | 유기수산물 |
|  |  | 활성처리제비사용 |
|  | 항로표지법 | 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검사 |
|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 |

2．기술규제영향평가 도입 및 시행 관점
（1）기술규제영향평가 도입 배경
2012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국가표준•인증 선 진화방안’에 따르면 중복인증의 개선，각 부처의 인증제 난립방지，기 술규제의 중복성 심사 등에 관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90 ）그의 결과로 기술규제에 관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여기서의 기술규 제는＂정부가 국민안전，환경보호，보건，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서비스，시스템 등에 특정요건을 법령 등 （고시•공고•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시험 • 검사 • 인증 등）등을 말한다．＂${ }^{91)}$
（2）기술규제영향평가 심사사항 및 절차

국무조정실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2013．12）에 따르면 법령의 제• 개정단계에서 관련법령의 제•개정안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 께 공표하고 국무조정실에 송부하는 경우，국무조정실은 기술규제영향 에 대한 평가를 기술규제개혁작업단에게 의뢰하게 된다．이에 따라 기 술규제개혁작업단은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실시한다．기술규제 영향평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90）지식경제부 보도자료，「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2012．7． 13.
91）국무조정실，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2013．12．
[그림 3] 법령 제 • 개정 절차와 기술규제영향평가


출처: 국무조정실,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2013.12)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은 기술규제의 영향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검토 하는 데，이때의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국가표준이 나 타부처 기술기준 등과의 중복성을 검토하고，기존에 운영되는 시 험 • 검사 • 인증제도와 중복성 여부와 시험 • 검사 • 인증의 중복시험결 과를 상호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 심층검토 중점 체크리스트

（1）국가표준（KS，KCS 등）이나 타 부처 기술기준과의 중복성 여부
（2）국가표준（KS，KCS 등）이나 타 부처 기술기준의 시험방법，절차 또는 정량 적 기준치와의 동등성 여부
（3）기존에 운영되는 시험•검사•인증제도와 중복성 여부
（4）시험 • 검사 • 인증의 중복시험결과의 상호인정 가능 여부
（5）국제표준（ISO，IEC，ITU 등），국제기준（IMO，ICAO 등）과의 부합성 여부
（6） $\mathrm{WTO} / \mathrm{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의 의견회람 여부
（7）해외 유사규제와 비교하여 너무 엄격한지의 여부
（8）적용기준은 합리적인 이유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
（9）구체적인 방법•수단•기술적 사항 등은 관련 표준 활용 가능한지 여부
출처：국무조정실，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2013．12）

## 3． 2014 년 12 월 개정 「국가표준기본법」의 관점

（1）국가표준의 통일적 • 일관적 관리 체계 수립
2014년 12월 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크게 표준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중복된 인증제도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두 가지 개정사항 모두 표준체계 및 적합성평가체제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통일된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보 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표준체계의 총괄관리에 관해서는 중 앙행정기관별로 운영되는 표준이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법 제 20 조제 3 항에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다. 종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 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던 것에서 '국가표준 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표준체계에 대 한 일관적인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여 정합성 및 중복 관리, 최종심의 등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출처: 국회 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4) ${ }^{92)}$
(2)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조항 신설

제품인증과 관련하여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하는 인증대 상의 시험항목이 타법령에 근거한 인증과 시험방법이 동일하고 시험 기준이 동일수준 이상인 경우 그 시험결과에 대해 타법령의 인증시에
9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 2014.11, 14면.

도 해당시험을 생략하도록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조항 을 신설하였다．그동안 인증제도가 개별부처에 흩어져 있는 까닭에 중 복적인 시험을 거치는 등 비용측면에서나 절차적 측면에서 비효율이 지적되어 왔고，93）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된 결과 시험결과의 상 호인정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다．이에 따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 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품목에 대해 동등수준 이상의 시 험검사 결과를 인정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제 20 조 및 제 25 조의 2

제 20 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1）정부는 산업표준，정보•통신표준，환경 기준，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 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 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할 수 있다．
（4）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제 3 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 25 조의 2 （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의 시험항 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일한 시험방법과 같은 수준 이 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하여야 한다．
（2）제 1 항에 따른 시험의 생략 및 시험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다．인증제도의 개선과제를 자세 히 다루고 있는 보고서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2013．11，118면 이하．

## 4．평가결과

제품인증에 관해 행정기관간의 통보 및 협의의무를 정하고 있는「국 가표준기본법」 제 22 조는 최근 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경과 및 개정방향을 고려할 때，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할 때 인증분야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 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인증분야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인증제도정비 성과나 향 후 지속적인 정비계획 등을 감안하면 제품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절차가 필요하다．이에 관해 총괄조정을「국 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 처간 의견대립이 있었고，이러한 배경 때문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조 정등의 역할의 주체를 「행정규제기본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국무조 정실에 두려고 한 바 있다．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역시 그와 같은 방 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합성평가체제의 추세 및 전망에 비추어볼 때도 국무조정 실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뿐만 아니라 「국 가표준기본법」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이기는 하나，그 제정취지나 법률의 지위를 고려한다면「국가표준기본법」과 별개로 국 무조정실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체계상으로 적합 하지 않다．특히，모든 적합성평가제도가 법정의무제도로 도입되는 것 도 아니며，향후 선진화될수록 적합성평가제도가 자율적인 임의제도 로 전환되어 갈 것을 전망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이를 조정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행 법체계를 크게 수정하지 않으면서 조정기관 을 정비하는 방안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22 조에서 인증제도 신설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의하

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그렇지 않으면 국가표준심의회에 통 보하고 심의회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적합할 것 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방향은 현행의 다른 법률의 내용을 고려하여「국가표준기본법」을 해석한다면 더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정체계와의 결부 해석과 표준 및 적합성평가체제 운영방식의 변화를 고려하면，조직을 더욱 전문화하 고 독립화하는 방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제 3 절 「국가표준기본법」제 22 조의 3 에 대한 입법평가

I．평가대상조항 개관

| 적용대상 |
|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간접적：신제품인증신청자） |
| 조항연혁 |
| 2010．4．5．개정으로 신설 |
| 규정내용 |
| 품에 대한 인증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 <br> 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br>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신제품으로 인증을 할 수 <br> 있다．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br>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br> （2）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 <br> 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 •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br>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 • 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 <br> 정 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ㅍ．규범론적 평가

1．신제품인증조항의 의의
（1）「국가표준기본법」제 22 조의 3 의 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제 22 조의 3 제 1 항은 신제품 인증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동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제품에 대한 강제인증등을 받도 록 하고 있는 경우에，인증등을 할 수 있는 기준 및 규격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절차를 정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다만，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기준 및 절차 등을 빠른 시간에 제품의 인증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동조제 2 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기준이나 절차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현행의 기준이나 규 격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기준이나 규격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2）「국가표준기본법」제 22 조의 3 의 입법배경
「국가표준기본법」 제 22 조의 3 조항은 새로운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 발된 제품에 대해 인증등의 기준이 없어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고，기 업이 즉각적인 시장확보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서 도입된 조항이라 할 수 있다．이에 관련된 사례로 제시된 것은 아 래와 같다．

## ＜표 26＞신제품인증 필요 및 해결사례

| 관련분야뭄화 애로 사례 |  | 해결방법 |
| :--- | :--- | :--- | :--- |

출처：「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0）94）

94）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0．2，17－18면 정리•보완．
(3) 외국사례

외국의 경우에도 아래 표95)에서와 같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규격을 활용하거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인증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위한 유사한 기준의 적용을 할 것인지를 분야별로 인증을 하 는 부처나 자문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며, 일부국가의 경우 결정된 적 용기준을 인증신청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인증기준으로 활용 하기도 한다. 아래의 표는 신제품인증조항과 유사한 외국의 제도현황 에 관한 사항이다.
<표 27> 외국의 신제품 인증절차

|  | 가명 | 인 증 절 차(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미국 } \\ & \text { (UL)* } \end{aligned}$ |  | - 기술기준개발 절차를 거쳐 적용기준 마련 <br> - 분야별 책임자가 관련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제품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 |
| $\begin{gathered} \text { 일본 } \\ \text { (S mark)** } \end{gathered}$ |  | - 관련 규격을 조합한 기준을 활용 <br> - 관련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제규격, 국가규격, 협회규격, 제 조자 제시 규격을 활용 |
| EU | 독일 | - 적용기준은 인증담당자(Technical Certifier)가 최종결정 <br> - 의무규격의 경우, 국제규격(IEC), 국가규격(DIN)***을 최 우선 적용 <br> - 임의규격은 인증기관(VDE 등)이 제시한 규격 또는 제조 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
|  | 스웨덴 | - 기술전문가회의를 통해 적용기준을 결정하고 제조자와 합 의하여 인증기준으로 활용 <br> - 신제품에 대하여는 국제규격을 공통기준으로 활용 |

9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 2010.2, 19면.

| 국가명 | 인 증 절 차（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
| :---: | :---: |
| 노르웨이 | －해당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규격의 조합을 이용 <br> －가능한 규격이란 국제•국가•단체규격 또는 제조자 제시 규격 |
| 핀란드 | －기술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용기준 채택 <br> $-\mathrm{CB} * * * *$ 시험기관과 협의 또는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거쳐 최종 적용기준을 결정 |
| 비 고 |  |
| ＊UL：Underwriters <br> ＊＊S mark：Safety <br> ＊＊＊DIN：Deutsches <br> ＊＊＊＊CB：Certificati <br> 과 상호인 | Laboratories，미국 비영리 안전시험 및 인증기관 <br> Mark，일본 전기제품 안전인증（주로 저전압 접속 전기기기 대상） Institut fur Normung（독일표준화기구），표준 명칭으로도 사용 n Body， $\operatorname{IECEE}$（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에서 운영하는 시험결 정에 참여하는 시험기관 |

출처：「국가표준기본법」검토보고서（2010）

신제품인증에 대해 일부에 대해 종전의 법령상의 허가등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기도 하나，신제품 인증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스 트트랙（Fast Track）절차를 만들지 않는 경우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2．신제품인증조항 관련 타법규정사항과의 관계
（1）타법상 유사조항과의 관계 평가의 필요성
현재 개별법에서「국가표준기본법」상의 신제품인증조항과 유사한 융 합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예비인증 혹은 임시허가 등의 명칭으로 제 정되는 법률들이 상당수 있다．「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 3 의 신제품 인증조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동조항이 타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유사조항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 요구된다．이를 통 해 「국가표준기본법」 제 22 조의 3 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우

선 입법례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조사결과 신제품 인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융합촉 진법」이 있다．
＜표 28＞신제품 인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

| 소관부처 | 법률명 | 신제품 인증 관련조문 |
| :---: | :---: | :---: |
|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기술 <br> 혁신 <br> 촉진법 | 제 16 조（신제품의 인증）（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 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 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 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br> （3）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 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br>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 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융합 촉진법 | 제 11 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1）제 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허가등＂이 라 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적합성 인증＂ 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소관 중앙행 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 소관부처 | 법률명 | 신제품 인증 관련조문 |
| :---: | :---: | :---: |
|  |  |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r>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br>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 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  |  | 제 12 조(적합성 인증 심사) (1) 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적 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br> (2)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br>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br>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 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에만 해당한다) |
|  |  | 제 13 조(적합성 인증 등) (1) 제 12 조에 따라 적합성 인 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 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 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 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 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 12 조제 2 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소관부처 | 법률명 | 신제품 인증 관련조문 |
| :--- | :---: | :--- |
|  |  |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 <br>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br> （2）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적합성 <br>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br>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br> （3）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1 항에 따라 산업융 <br> 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 <br> 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 <br> 으로 본다． <br>  |
|  | （4）제 1 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 <br>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br>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br>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br> 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 <br>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 <br> 여 고시하여야 한다． <br> （5）제 1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 <br> 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br>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신제품 인증과의 관계 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은 제명을 신제품인증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동일한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6 조 는「국가표준기본법」상의 신제품인증과는 상이하다．「산업기술혁신 촉 진법」 제 16 조96）의 신제품의 의미는＂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 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96）「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신제품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 18 조의 3 ，제 19 조，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서 정하고 있다．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의미하고，이에 대한 인증을 신제품 인증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의인증의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내용은 물론，그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으므로 「국 가표준기본법」상의 신제품인증과는 중첩되지 않는다．
＜표 29＞신제품 인증（NEP）의 개요

| 제도배경 | 1993년 5월 21일，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 （NT）인증제도 도입 <br> 1995 년 5 월 10 일，제 15 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 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책에 기계 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br> 2006년 1월 1일， 5 개부터， 7 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신제품 （NEP）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 여 운영 <br>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을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총괄운영 |
| :---: | :---: |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 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 인증대상 <br>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br>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br>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 하지 아니한 제품 <br>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br> 식품，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br> 누구나 쉅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br>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br>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 유효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심사후 3 년의 범위에서 연장） <br> ．공공기관 $20 \%$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br>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br>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br>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br>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br>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br>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br>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계약보증，차액보증，지급보증，하자 <br> 보증 우대 지원 <br>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 :---: | :--- |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97）
（3）「산업융합촉진법」상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의 관계 평가
「산업융합촉진법」은 제11조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정하고 있다．동조는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및 기존의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 여 제조자등이 개별법령상의 허가•승인•인증•검증 • 인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때 동법 제11조 제2항은 신제품이 여러 법령에 연관되는 경우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면，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동 제도는 융합과 관련하여서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 한 특별법」의 신속처리조항과 입법취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97）http：／／www．kats．go．kr／content．do？cmsid＝67，2015－11－14 최종방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 36 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1)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규 정 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 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 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에 따 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 1 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해당 신청인은 제 4 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미 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 조제 1 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 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 6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산업융합촉진법」의 적합성인증은 일정부분 「국가표준기본법」의 신 제품인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산업융합촉진법」상 신제품 적합성인증과 「국가표준기본법」의 신제품인증조항과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간 상이하다．
＜표 30＞「국가표준기본법」과「산업융합촉진법」상의 신제품 인증조항 비교

|  | 신제품 인증 | 신제품 적합성 인증 |
| :---: | :---: | :---: |
| $\begin{array}{\|l\|} \text { 인증 } \\ \text { 근거 } \end{array}$ | －「국가표준기본법」 | －「산업융합촉진법」 |
| $\begin{aligned} & \text { 인증 } \\ & \text { 대상 } \end{aligned}$ | －신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
| $\left\lvert\, \begin{array}{l\|l} \text { 인증 } \\ \text { 성격 } \end{array}\right.$ | －강제 <br> －인증등（인증，검정，등록，인정，심 사，검사，신고，형식승인 등） | －강제／임의 모두 해당 <br> －허가등（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 |
| $\begin{aligned} & \text { 인증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 $\left\lvert\, \begin{array}{\|l\|l\|} \text { 인증 } \\ \text { 상황 } \end{array}\right.$ | －현행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 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 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 요건 등이 없는 경우 <br>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 $\left\lvert\, \begin{array}{l\|l\|} \text { 인증 } \\ \text { 방법 } \end{array}\right.$ |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 를 정하여 인증등을 수행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과 함 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 증 관련사항 협의 |

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신제품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서 하나의 법률에 따른 인증기준이 없어 인증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국

가표준기본법」상의 인증，융합의 성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법률에 따 른 인증（허가）기준이 없어서 인증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산업융합 촉진법」상의 적합성 인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그러나 「산 업융합촉진법」에서도 반드시 다수의 부처와 관계되는 것만을 적합성 인증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국가표준기본법」상 신제품 인증과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 성 인증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3．평가결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신제품 인증은 「국가표준기본법」의 많은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국가표준기본법」상의 신제품인증과는 성격이 매우 다름에도 불 구하고 동일한 제명을 사용하고 있어，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 표준기본법」의 조제명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하다．특히，「국가표준 기본법」의 신제품인증조항과 개별법상 임시허가 등의 조항과의 관계 를 고려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융합기술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신제품의 경우「국 가표준기본법」상의 신제품 적합성인증대상이 되는지，「산업융합촉진 법」상의 신제품 인증대상이 되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으므로，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계 규정의 문구나 관계조항 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

## III．실효성 평가

1．신제품인증조항의 실효성 확보 방식
개별법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예비적－임시적 허가등을 규정하고 있 는 사례가 다수 있다．각 개별입법례를 분석해 보면，특별히 조의 제

목이나 용어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허가등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 예비적인 허가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종 종 조제목에서 예비형식승인이나 잠정인증 등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 는 경우도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상의 신제품 인증조항의 형식은 매우 단순하게 규 정되어 있다．동법 제 22 조의 3 은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 차와 방식을 통해 신제품도 인증을 받아 시장출시를 할 수 있다는 의 미에서 선언적인 측면으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이에 대해 어떻게 구체화할지，이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서 는 개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표준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이와 같은 임시허가조항을 개별법에 두는 것 그 자체는 기본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되는 것이고，오히려 기본법의 입 법취지상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만，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융합촉진법」상의 적합성 인증과 「국가표준기본법」이 명확 히 구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타 개별법상의 임시허가 조항 이 「산업융합촉진법」과는 어떠한 관계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위 해서는 예비인증등（허가등）의 절차를 두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례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

2．예비인증－임시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분석

현행법체계상 법률에서 예비（임시）허가등을 두고 있는 입법례를 조 사하면 아래 표와 같다．분석 결과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제도를 규 정하고 있는 많은 법률들은 이러한 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법률명 | 예비허가등 관련조문 | 조문제정시기 |
| :---: | :---: | :---: | :---: |
| 국토 <br> 교통부 | 건축법 ＜건축물의 <br> 피난• <br> 방화구조 <br> 등의 <br> 기준에 <br> 관한 <br> 규칙＞ |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br> （1）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 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 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신제품＂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 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 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br> （3）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 1 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br>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 능인정 기준 및 절차，위원회 운영 및 구 성，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0．4．7 |
| 미래 <br> 창조 <br> 과학부 | 전파법 | 제 58 조의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br>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 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방송 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 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적합성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 2 항에 따른 적합 인증，제 3 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 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적합성평 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br> 1．제 37 조 및 제 45 조에 따른 기술기준 <br> 2．제 47 조의 2 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br> 3．제 47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br> 4．「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 28 조에 따른 기술기준 | 2010．7．23．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법률명 | 예비허가등 관련조문 | 조문제정시기 |
| :---: | :---: | :---: | :---: |
|  |  | 5．「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 조에 따른 기술기준 <br> 6．「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br> 7．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br> （2）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 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 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 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 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 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br> （7）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 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 내외 표준，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 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유효기간 등의 조 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 매를 허용（이하＂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br> 1．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br> 2．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 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br> 3．이용자의 인명，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br> （8）제 7 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 <br> 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 |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법률명 | 예비허가등 관련조문 | 조문제정시기 |
| :---: | :---: | :---: | :---: |
|  |  | 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 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br> (9)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 8 항에 따른 기 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br> (10) 제 1 항부터 제 9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 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산업 <br> 통상 <br> 자원부 | 전기용품 <br> 안전 <br> 관리법 | 제 3 조(안전인증) <br> (3)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2011.3.30 |
|  |  | 제 11 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안전인증기관이나 제 11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 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2011.3.30 |
| 산업 <br> 통상 <br> 자원부 | 품질경영 <br> 및 공산품 <br> 안전관리법 | 제14조(안전인증 등) <br>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 2011.7.25 |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법률명 | 예비허가등 관련조문 | 조문제정시기 |
| :---: | :---: | :---: | :---: |
|  |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br> 1. 공산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 두 거칠 것 <br>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 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 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br>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 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 을 신청하여야 한다. <br> (3)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 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 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 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br> (9)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 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 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br> (10) 제 2 항, 제 4 항, 제 6 항부터 제 8 항까지의 규 정은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 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소관 <br> 부처 | 법률명 | 예비허가등 관련조문 |  |  | 조문제정시기 |
| :--- | :--- | :--- | :--- | :---: | :---: |
|  |  |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2 <br>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은 산 <br>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 <br> 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 <br> 용하여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 <br> 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 <br>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 <br> 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 <br> 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 <br>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 검사를 <br> 할 수 있다. |  |  |  |


| $\begin{align*}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tag{1} \end{align*}$ | 법률명 | 예비허가등 관련조문 | 조문제정시기 |
| :---: | :---: | :---: | :---: |
| 환경부 | 환경분야 <br> 시험• <br> 검사 등에 <br> 관한 법률 | 제 9 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 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br> 1.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br> 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 검사등의 정밀도•정확도가 개선된 것으 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 <br> (2) 제작자등은 제 1 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 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 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br> (3)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 이 다시 제9조제 1 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br> (4)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제9조 제 1 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br> (5)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 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 기에 대한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br>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 식승인을 받은 경우 <br> 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br> 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012.2.1. |


| 소관 <br> 부처 | 법률명 | 예비허가등 관련조문 | 조문제정시기 |
| :--- | :---: | :---: | :---: |
|  |  | （6）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 <br> 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 <br> 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3．평가결과

「국가표준기본법」 제 22 조의 3 의 실효성은 동조항 자체로는 평가하기 어렵다．특히 신제품인증 조항은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고，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 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도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 차를 정하여 신제품 인증을 하게 될 것이므로，「국가표준기본법」 제 22 조의 3 의 실효성의 검토는 개별법에 미친 영향 내지 개별법에서 기 본법에서 규정한 방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을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신제품 인증 조항의 도입시 국회의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국회는 검토보고서에 서＂개정안의 실효성에 있어서 각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개별 법령 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제도가 정비되지 않 는 한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으나，국가표준 및 시험인증 등에 관한 기본법인 동법에서 인증기준에 대한 원칙적 기준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고 하였다．98）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 신제품인증 조항에 대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품과 관련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신제품 인증을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개별법에서 신제품 인증제도를

98）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0．2，4－5면．

제 4 장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체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앞서 검토한 예비인증등에 관한 입법례 의 제정시기를 보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동조항이 신설된 이후인 20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별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은 조 항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실제 수행하고 있다고 보인다．아 직까지 관련법령에서 신제품인증과 유사취지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법률이 많다는 점에서，「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은 신제품 인 증을 위해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문으로 평가가 가능하며，한 편으로 동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법에 위와 같은 조 항을 정하도록「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제 5 장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 

## 제 1 절 입법평가결과

본 연구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의 적합성평가시스템 관련 조항들 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평가대상 조항은 「국가표준기본법」 상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제 21 조，제 22 조，제 22 조의 3 ，제 23 조이고，평 가방법은 조항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주로 규범론적 평가방법，실효 성 평가방법，법정책적 평가방법，비교법적 평가방법 중 적합한 방법 으로 평가하였다．

입법평가결과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상의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조항은 「국가표준기본법」은 물론，평가대상이 된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 었다．적합성평가체제를 선진화하고 국제통용력을 가지는 시험검사인 증등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부문에 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조항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법평가의 결과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관련조항 |  | 평가방식 | 평가척도 | 평가결과 | 입법대안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국 } \\ & \text { 가 } \\ & \text { 표 } \\ & \text { 준 } \\ & \text { 기 } \\ & \text { 본 } \\ & \text { 법 } \end{aligned}$ | 제21조 <br> 제 23 조 <br> 시험검사 <br> 기관 <br> 인정조항 | 규범론적 <br> 평가 | 법 제23조 <br> 및 시행령 <br> 제 16 조 에 <br> 대한 법령 <br> 내용 해석 |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는 동 법 시행령 제 16 조와의 관계에 서 검토하는 경우 「국가표준기 본법」에서 제23조를 두는 목적 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시행 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지 않 고 있으며，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도 법률이 위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법조항의 정비 <br> 또는 시행령 정 <br> 비 필요 <br> 구체적 개정안 <br> 제시는 부적합 <br> 한 영역 |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


|  | 평가방식 | 평가척도 | 평가결과 | 입법대안 |
| :---: | :---: | :---: | :---: | :---: |
|  |  |  | 할지 복수체제를 유지할지는 모 두 정책적 판단사항이나，표준 정책의 특수성 및 국제적 측면 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 요하고，이를 반영하는 법령정 비가 요구된다고 평가 |  |
| 제 22 조 <br> 제품 <br> 인증등 <br> 조항 | 규범론적 평가 | 법령 제• <br> 개정시 협 <br> 의 및 통 <br> 보 규범의 <br> 성격 분석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 의의 인증•검정 • 등록 • 인정 • 심사 • 검사 • 신고 • 형식승인 등의 제도도입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강제제도의 경우에는 법령 제 정 및 개정시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 <br> 다만，임의인증을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동 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보를 함과 동시에，「법 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라 협의의 대상도 되므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 「법제업무 운영 규정」을 고려하 면 통보로 규정 하고 있는 사 항은 개정필요 |
|  | 실효성 평가 | － | 해당사항 없음 | － |
|  | 법정책적 <br> 평가 | 제 품 인 증 관 련 분 야 의 정책방 향 및 법 령 정 비 방 향과의 부 합성 검토 | 최근 인증분야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인증제도정비 성과나 향 후 지속적인 정비계획，「행정규 제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최근 「국 가표준기본법」의 개정취지를 고 려할 때 소관부처가 인증제도 도입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적 합하지 않음 | 통보조항을 협 의로 개정 또는 면 국가표준심 의회에 통보하 고 심의회의 검 토를 받도록 하 는 체계로 정비 검토 <br> 구체적 개정안 제시는 부적합 한 영역 |

##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

| ！련조항 | 평가방식 | 평가척도 | 평가결과 | 입법대안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제22조의3 } \\ & \text { 신제품 } \\ & \text { 인증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규범론적 <br> 평가 | 신 제 품 인 <br> 증명칭 사 <br> 용법령 전 <br> 수조사 및 <br> 동 조 항 과 <br> 유사한 취 <br> 지규정 전 <br> 수조사 | 신제품인증조항의 성격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상 신제품 인증의 명칭과 운영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혼선을 유발가능 신제품인증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로서，개별법에 규 정되어 있는 임시허가，잠정허 가 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함 또한 실질적으로 융합기술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신제품의 경 우 「산업융합촉진법」상의 신제 품 인증과의 관계설정이 모호함 | 동일한 제명을 <br> 사용하고 있어 <br> 혼선을 유발하 <br> 는 조항과의 명  <br> 칭을 구분하고，  <br> 개별법에 규정  <br> 된 사항과의 관  <br> 계를 명확히 설  <br> 정하여 용어재  <br> 설정 및 통일  <br> 필요  |
|  | $\begin{aligned} & \text { 실효성 } \\ & \text { 평가 } \end{aligned}$ | 신 제 품 인 증 조 항 과 실 질 적 인 내용이 동 일한 입법 례 분석 및 관계분석 | 「국가표준기본법」의 동조항의 영향을 받아 개별법에서 신제 품 인증제도를 구체화하고 있 는 입법례가 상당수 있다는 점 은 매우 바람직하며，기본법 조 항의 역할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br> 「국가표준기본법，제 22 조의 3 은 신제품 인증을 위해 여전히 의 미를 가지고 있는 조문으로 평 가가능 |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법에 위와 같은 조항을 정 하도록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검토 필요 |
|  | 법정책적 <br> 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 |

## 제 2 절 결론 및 입법대안제시

적합성평가체제의 확립 및 개선은 우리나라 시험인증제도와 관련하 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현재 표준정책분야에서 가 장 주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도 적합성평가체제와 직결되어 있 다．「국가표준기본법」은 적합성평가시스템과 관련하여 기본법적 지위

를 가지고 있으므로，시험•인증•검사•교정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체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 법평가가 필요하다．특히나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를 확립 하고，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정보사회화에로의 발 전과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그 이전에 이미 「산업표준화법」이나 「계량법」，그리고 개별법상의 적합 성평가 관련 조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국가표준기본법」의 제 정이 기존제도의 형성보다 늦었다고 볼 수 있다．「국가표준기본법」과 관련법이 체계정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입법연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인다．
「국가표준기본법」은 전형적인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그 성 격이 정부의 표준관련정책을 모두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한 포괄적• 추상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입법평가결과 현행 적합성평가체제 중 인정에 관한 조항은 체계의 복잡성，규범효과의 중복성 등의 문제 로 인해 실제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결과가 기본법의 이념이나 방향，조직 등 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입법대안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하 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자면，표준정 책 더 나아가 적합성평가체제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 제적 연계도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인정 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국가표준기본법」이 인정조 항에 대한 사항을 하위규범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취지에 가깝 게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의 인정조항이 시행령과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합성평가에 포함되는 제품인증에 관한 협의 • 통보조항은 조 항 자체에 대한 규범론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타법령과의 관계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며，인증제도 전반에 걸친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및

제 5 장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대안

「국가표준기본법」의 최신 개정동향을 고려하여 법정책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제품인증등에 관한 협 의통보조항의 경우 통보제도가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었으므로，이러한 경우에는 기본법에 포함된 조문이기는 하지만，특별히 개정방향에 대 해 정부의 판단이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개정안의 작성이 가능하다．제품인증등의 제도도입시 통보와 협의를 구분하고 있던 것을 모두 협의제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인증조항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상의 규정 은 동조항의 제정이후 개별법에서 신제품인증을 위한 제도가 구체화 된 점에서는 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으다．현재 동 조항을 활용하여 신제품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기 때문 에 동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으나，기본법에 규정된 개별법으로의 구체화를 유도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동조항은 오히려 개별법에 규정되고 있는 신제품인증 조항의 기초가 된다는 점 에서 기본법 조항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만，유사명칭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타법과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면서 개별법상 유사제도를 포섭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강병구，『단일인정기구 출범에 따른 KOLAS 중심의 통합인정제도의 효율화 연구』，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2．8．

강현철，『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일 반론 연구－』，한국법제연구원，2013．10．

강현철，『입법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2.
강현철•한귀현，『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지역개
발 관련 특별법 입법체계를 중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2013．9．
구제길 외，『정보통신 통합인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미래 창조과학부 연구보고서，2007．11．

국무조정실，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2013．12．
국회 법제실，『법제실무』，2015．1．
김대희•강현철•류철호，『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김동진 외，＂우리나라 국가표준체계 현황과 선진화 방안＂，한국기술 혁신학회지， 2000.

박영도，『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한국법제연구원，2006．10．
박영도，『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한국법제연구원， 2007.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2012．12．
산업연구원，『인정제도 경쟁력 제고방안』，2015．8．
서경미，영국 UKAS 인정시스템의 파급효과－시장분석과 품질인프
라를 중심으로－，KSA Policy Study 010 Global 동향분석 2015－1 호，한국표준협회，2015．2．

써티코리아，『MRA에 대비한 국내 정보통신 지정시험기관 관리 개 선방안 연구』，방송통신위원회，2004．12．

이은숙，국내 적합성 평가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명지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종영•백옥선，＂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중앙법학』 제 15 집 제 2 호，중앙법학회，2013．6．

지식경제부 보도자료，「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2012．7．13．
한국비교공법학회，『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2013．11．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2015．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학기술기본법안 심사보고서，2000．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심사보고서，2002．4．
산업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안 검토보고서，1998．12．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0．2．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4．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 검토보고서，2015．4．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2015－11－14 최종방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2015－11－10 최종방문）．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 홈페이지（http：／／www．aqsiq．gov．cn，2015－11－11 최 종방문）．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 홈페이지（http：／／ilac．org，2015－11－13 최종방문）．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 2015-11-10 최 종방문).

독일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dakks.de, 2015-11-10 최종방문).
아시아-태평양 시험기관 인정협력체 홈페이지(https://www.aplac.org, 2015-11-13 최종방문).

영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ukas.com, 2015-11-10 최종방문).
일본공업표준조사회 홈페이지(http://www.jisc.go.jp, 2015-11-13 최종방문).
일본적합성인정협회 홈페이지(http://www.jab.or.jp, 2015-11-13, 최종방문).
전자환경시험소 인정센터 홈페이지(http://www.vlac.co.jp, 2015-11-14 최 종방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홈페이지(http://www.nite.go.jp, 2015-11-15 최종 방문).

중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cnas.org.cn, 2015-11-11 최종방문).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 2015.11.09. 최종방문).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www.kolas.go.kr, 2015-11-10 최종방문).
한국인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ab.or.kr, 2015-11-10 최종방문).
기본법의 규성방식 비교

## 

|  | X |  |  | X | X | （ ） |  <br>  <br>  <br>  <br>  <br>  <br>  | 俗后 |  | $\begin{gathered} \text { 龺点凹 } \\ \text { 亚논 } \end{gathered}$ |  | 晶沓（L昆库导飞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앙 $1 \frac{1}{\circ}$ <br>  즌ㄴㄴㅗㅗ | X |  | X | （ ） | （ ） | －옹｜と－ 1 ｜ <br>  <br>  <br>  <br>  <br>  | 信何 | $\begin{gathered} \& \because \cup \\| と \\ \cdot I Z^{\prime} \varepsilon 800 Z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곱 } 1 \times \text { 눕 } \\ & \text { ㄹ百 } \end{aligned}$ |  | 晶㽰（L陙品 － 12 F |
| X | X | X |  | X | （ ） | （ ） |  <br>  <br>  <br>  <br>  <br>  <br>  <br>  | －+ 信 11 |  | $\begin{aligned} & \text { 直只t< } \\ & \text { Brybo } \end{aligned}$ |  | 晶굼 $1<$ 은 <br>  |
| 占 届 | 윽｜흐공｜닝 | 昆立 <br> 눞｜｜ㄷㄷ |  <br>  | 1 1 届 <br> 융는 | 음ㅍ <br> 吉屚 | 䎏 10 <br> 굼｜c |  | $\begin{aligned} & \\| \underline{x} \frac{1}{x} \\ & \text { नol\|ly } \end{aligned}$ | ｜C｜Y Fix｜ly | $\begin{aligned} & \text { 毕立 } \\ & \text { 辰衣 } \end{aligned}$ | 品寝 <br> ｜너ㅇㅡㅡ | 음압 |

[부록 1]

| 법령명 | 하위 법령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begin{aligned} & \text { 제ㅇㅏㅏㄴ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기본 } \\ & \text { 이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책무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적용 } \\ & \text { 범위 } \end{aligned}$ | 타법과의 <br> 관계 | 계획 <br> 수립 | 위원회등 | 벌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건축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 $\begin{gathered} \text { 국토 } \\ \text { 교육부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2007.12.21.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의원 |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 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 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 © | © | X | 타법 제 - 개 <br> 정시 이 법 <br> 목적 및 기 <br> 본이념 준수 | $\begin{aligned} & \text { 건축 } \\ & \text { 정책 } \\ & \text { 기본 } \\ & \text { 계획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국가 } \\ \text { 건축 } \\ \text { 정책 } \\ \text { 위원회 } \\ \text { 등 } \end{gathered}$ | X |
| 경찰 <br> 공무원 <br> 보건 <br> 안전 및 <br> 복지 <br> 기본법 | 시행령 | 경찰청 | $\begin{gathered} \text { 2012.2.22.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의원 |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 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 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 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함 | X | © | X | $\begin{aligned} & \text { 타법규정 없 } \\ & \text { 는 한 이 법 } \\ & \text { 적용 } \end{aligned}$ | 경찰 <br> 공무원 <br> 보건 <br> 안전 <br> 및 <br> 복지 <br> 증진 <br> 기본 <br> 계획 | 경찰 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심의 위원회 | X |
| $\begin{aligned} & \text { 고용 } \\ & \text { 정책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begin{aligned} & \text { 고용 } \\ & \text { 노동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1993 . \\ & \text { 12.27.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정부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 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 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 | $\bigcirc$ | © | X | 타법 제 - 개 <br> 정시 이 법 <br> 목적 및 기 <br> 본원칙 준수 | 고용 <br> 정책 <br> 기본 <br> 계획 | 고용정책 <br> 심의회 | $\begin{gathered} \text { © } \\ \text { (비밀 } \\ \text { 누설 } \\ \text { 금지 } \\ \text { 위반) } \end{gathered}$ |


| x | X | x | X | x | $\bigcirc$ | © |  <br>  <br>  <br>  | 直最 |  | 亯年匹 | 믕 㓉 | $\begin{aligned} & \text { 昆궅\|< } \\ & \text { 뇽파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X |  | x | X | $\bigcirc$ | x |  <br>  <br>  <br>  <br>  | 京最 |  |  | 믕 嘽 | $\begin{aligned} & \text { 昆굵lく } \\ & \text { 是度 } \end{aligned}$ |
| x | 올 <br>  <br> 론 16 <br> 은떤논 |  | 显吉 110 品 10 <br> 晶 10 1と昆 Hと・比 晶㷠 | X | $\bigcirc$ | © |  <br>  <br>  <br>  <br>  <br>  | 亘最 |  |  |  | $\begin{gathered} \text { 昆굵lく } \\ \text { 空k } \\ \text { to } \end{gathered}$ |
|  |  |  |  |  |  |  |  <br>  <br>  <br>  <br>  |  |  |  |  |  |
| 座启 | 윽｜ㅜ궁｜누 | $\begin{aligned} & \text { 展 } \\ & \text { 荷\|l\| } \end{aligned}$ | ｜ECT균「허답… | 1生届 융 |  | 啊lo 굼। |  | $\begin{aligned} & \\| \underline{\\|} \frac{1}{x} \\ & \text { fol\|ly } \end{aligned}$ | ｜C｜yefl｜ly |  | 울㫛 \|허응 | 品品㫛 |

［부록 1］

| 씨 <br> 现 |  | $x$ |  |
| :---: | :---: | :---: | :---: |
|  |  |  |  |
| $\frac{10 \mathrm{ONT}}{\tilde{N}}$ |  |  |  |
|  |  |  |  |
| $\frac{0: 10}{\mathrm{O} 5} \frac{\text { 아 }}{\mathrm{K} \Gamma}$ | $\star$ | $\star$ | $\star$ |
|  | $\bigcirc$ | $\bigcirc$ | $\bigcirc$ |
| $\frac{\text { 페 }}{n} \frac{\mathrm{Man}}{0}$ | $\bigcirc$ | © | O |
|  |  |  |  |
|  | 碳 | $\begin{aligned} & \dot{\vec{x}}^{\circ} \\ & \frac{\mathrm{F}_{\mathrm{N}}^{\mathrm{o}}}{} \end{aligned}$ | $\stackrel{\text { 파 }}{\substack{\text { º }}}$ |
| $\begin{aligned} & \overline{\frac{n}{\alpha}} \\ & \frac{k_{0}}{\bar{K}} \end{aligned}$ |  |  |  |
| 榃袼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部 } \\ & \text { 剞 } \end{aligned}$ |  |  |  |


| X | 호앙ㅇㅇㅇㅇ －7品 내요나녿 |  |  <br> 올 \｜ $4=\angle \\|$ 웅t | X | X | X |  <br>  <br>  <br>  <br>  <br>  <br>  | 京最 |  | 直昆 4 LK 능 L |  | $\begin{gathered} \text { 晶굵\|< } \\ \text { \|나논 } \end{gather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 X | 느은 <br> 은 $\mid y$ <br> ＇느얀 <br> 궅 $1<$ <br>  <br> $t<1 \leqslant$ |  <br> ＜咅 站客 <br> 晶 1 ○ 〈と吴 <br> HL • 比 昆抽 | X | （ 0 | （ ） |  <br>  <br>  <br>  <br>  <br>  | 倍右 | 昆 140 <br> 은 $\mid y$ <br> ＇6I＇II <br> －sioz <br> tyly <br> －8I＇s＇sioz | 吉居以 <br> －ir 울 <br> 昆析 | 웂으은 | 晶甬（く <br>  <br> $t<10$ <br> 근논 |
| X | 홍ㅎㅇ만 곷퓬ㄴ논 | $\begin{aligned} & \text { 능 } \mid E C \\ & \text { 국 } \mid \angle \\ & \text { 곤푠 } \\ & t \angle \text { 돈 } \end{aligned}$ |  | （ ） | （ 0 | X |  <br>  <br>  <br>  <br>  <br>  | 信右 |  |  | 웂으은 | $\begin{gathered} \text { 晶굴L< } \\ \text { 分恶 } \\ \text { t<논 } \end{gathered}$ |
| 兴 | 윽｜즈공｜깅 | 尼立 <br> 늪｜｜： |  <br>  | 1号届 <br> 융 | 음ㅍ <br> 吉h | $\text { 肙 } 10$ 굼\|단 | 드ㄴㅜㅜㅁㅏㅏㅢ．｜Y |  | ｜C｜yryl｜r | $\begin{aligned} & \text { 皆咅 } \\ & \text { 层立 } \end{aligned}$ | 을 <br> ｜넝은 | 器階早 |

[부록 1]

| 법령명 | 하위 법령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begin{aligned} & \text { 제안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제정목적 | 기본 이념 | $\begin{aligned} & \text { 책무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적용 } \\ & \text { 범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타법과의 } \\ & \text { 관계 } \end{aligned}$ | 계획 수립 | 위원회등 | 벌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국어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begin{aligned} & \text { 문화 } \\ & \text { 체육 } \\ & \text { 관광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2005 . \\ & 1.27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정부 |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 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 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 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 에 이바지함 | © | © | X | $\begin{aligned} & \text { 타법규정 없 } \\ & \text { 는 한 이 법 } \\ & \text { 적용 } \end{aligned}$ | 국어 <br> 발전 <br> 기본 <br> 계획 | 국어 심의회 | X |
| $\begin{aligned} & \text { 국제 } \\ & \text { 개발 } \\ & \text { 협력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 $\begin{aligned} & \text { 외교부, } \\ & \text { 국무 } \\ & \text { 조정실 } \end{aligned}$ | $\begin{aligned} & 2010 . \\ & 1.25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위원장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 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 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 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 에 기여함 | O | © | X | 타법 제 - 개 <br> 정시 이 법 <br> 목적 및 기 <br> 본정신 부합 | $\begin{aligned} & \text { 국제 } \\ & \text { 개발 } \\ & \text { 협력 } \\ & \text { 기본 } \\ & \text { 계획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국제개발 } \\ & \text { 협력 } \\ & \text { 위원회 } \end{aligned}$ | X |
| $\begin{aligned} & \text { 국토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 $\begin{aligned} & \text { 국토 } \\ & \text { 교통부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2002.2.4.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정부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 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 O | $\bigcirc$ | X | X | $\begin{aligned} & \text { 국토 } \\ & \text { 종합 } \\ & \text { 계획 } \end{aligned}$ | 국토정책 위원회 | X |


| 기본법의 규성방식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령명 | 하위 법령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begin{aligned} & \text { 제안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기본 } \\ & \text { 이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책무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적용 } \\ & \text { 범위 } \end{aligned}$ | 타법과의 <br> 관계 | $\begin{aligned} & \text { 계획 } \\ & \text { 수립 } \end{aligned}$ | 위원회등 | 벌 칙 |
| $\begin{gathered} \text { 군인 } \\ \text { 복지 } \\ \text { 기본법 } \end{gathered}$ | 시행령 | 국방부 | $\begin{aligned} & \text { 2007. } \\ & \text { 12.21.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의원 |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 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 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 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X | $\bigcirc$ | X | $\begin{aligned} & \text { 타법규정 없 } \\ & \text { 는 한 이 법 } \\ & \text { 적용 } \end{aligned}$ | 군인 <br> 복지 <br> 기본 <br> 계획 | 군인복지 위원회 | X |
| $\begin{aligned} & \text { 근로 } \\ & \text { 복지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begin{aligned} & \text { 고용 } \\ & \text { 노동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2001 . \\ & 8.14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정부 |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 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 | © | $\bigcirc$ | X | X | $\begin{aligned} & \text { 기본 } \\ & \text { 계획 } \end{aligned}$ | 복지기금 <br> 협의회 | $\begin{gathered} \hline \text { © } \\ \text { (행위 } \\ \text { 및 } \\ \text { 금지 } \\ \text { 의무 } \\ \text { 위반) } \end{gathered}$ |
| $\begin{aligned} & \text { 농어업 } \\ & \text { •농어 } \\ & \text { 촌 및 } \\ & \text { 식품 } \\ & \text { 산업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농림 <br> 축산 <br> 식품부, <br> 해양 <br> 수산부 | $\begin{gathered} \text { 1999.2.5.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정부 |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 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 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 | $\bigcirc$ | X | $\begin{aligned} & \text { 타법 제 • 개 } \\ & \text { 정시 이 법 } \\ & \text { 부합 } \end{aligned}$ | 농어업 <br> -농어 <br> 촌 및 <br> 식품 <br> 산업 <br> 발전 <br> 계획 | 정책 심의회 | X |


| 법령명 | 하위 <br> 법령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begin{aligned} & \text { 제안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제정목적 | 기본 이념 | $\begin{aligned} & \text { 책무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적용 범위 | $\begin{gathered} \text { 타법과의 } \\ \text { 관계 } \end{gathered}$ | 계획 <br> 수립 | 위원회등 | 벌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문화 } \\ \text { 기본법 } \end{gather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문화 <br> 체육 <br> 관 광부 | $\begin{gathered} 2013 . \\ 12.30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의원 |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 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 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 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0) | ( ) | X | (1) 타법 제• 개정시 이 법 목적 및 기본 이념 부합 (2) 타법규정 없 는 한 이 법 적용 | 문화 <br> 진흥 <br> 기본 <br> 계획 | X | X |
| 문화 <br> 산업 <br> 진흥 <br> 기본법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문화 <br> 체육 <br> 관광부 | $\begin{gathered} \text { 1999.2.8.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위원장 |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 | X | ( ) | X | 타법규정 없 는 한 이 법 적용 | 문화 <br> 산업의 <br> 중 <br> 장기 <br> 기본 <br> 계획 | X | X |
| 물류 <br> 정책 <br> 기본법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국토 교통부, 해양 수산부 | $\begin{aligned} & \text { 2007.8.3. } \\ & \text { 전부개정 } \end{aligned}$ | 위원장 |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 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 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 | ( | X | (1) 타법 제• 개정시 이 법 목적과 물류 정책 기본 이 념 부합 (2) 일부 타법으 로 정함 | 국가 <br> 물류 <br> 기본 <br> 계획 | 국가물류 <br> 정책 <br> 위원회 <br> 등 | © <br> (행위 <br> 및 <br> 금지 <br> 의무 <br> 위반) |


| $\begin{aligned} & \bar{k} \Gamma \\ & \text { 岍 } \end{aligned}$ |  |  | $x$ |
| :---: | :---: | :---: | :---: |
|  | No | $x$ |  |
| $\frac{\text { 位華 }}{\text { 矿 }}$ | $x$ |  |  <br>  |
|  |  |  |  |
|  | $x$ | $x$ | $x$ |
| $\begin{aligned} & \text { 마추충o } \\ & \text { K- } \end{aligned}$ | （ ） | × | （ ） |
| $\frac{\text { 거 }}{n} \frac{\text { 和 }}{0}$ | $x$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파 } \\ & \mathbb{N}^{0}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파 } \\ & \mathbb{N}^{0} \end{aligned}$ |
| $\begin{aligned} & \frac{\bar{N}}{\widehat{\alpha}} \\ & \frac{\overline{K 0}}{\bar{K}} \end{aligned}$ | N | $\dot{\sim} \dot{\sim}$ |  |
| $\begin{aligned} & \text { 前胥 } \\ & \text { A가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text { 절 } \frac{\text { 가 }}{k} \\ & \text { IH } \\ & \text { 파 } \end{aligned}$ |
|  |  |  |  |
| $\begin{aligned} & \text { 荷 } \\ & \text { 剞 } \end{aligned}$ |  |  |  |

［부록 1］

| $\begin{aligned} & \bar{k} \Gamma \\ & \text { 岍 } \end{aligned}$ | $x$ | $x$ | $\star$ |
| :---: | :---: | :---: | :---: |
|  |  |  | $x$ |
|  | $x$ |  |  |
|  | $x$ |  | $x$ |
|  | $x$ | $x$ | $x$ |
|  | $x$ | © | © |
| $\frac{\text { 퍼 }}{n} \frac{\text { 吅 }}{0}$ | $x$ | （ | © |
|  |  <br>  <br>  <br>  <br>  <br>  <br>  <br>  <br>  <br>  |  |  |
| $\frac{\stackrel{\rightharpoonup}{\circ}}{\bar{K}} \stackrel{\bar{k}}{k \mid}$ | $\frac{0, ~}{0}$ |  |  |
|  | $\dot{\sim}$ |  |  |
| $\begin{aligned} & \text { 前胥 } \\ & \text { से } \end{aligned}$ |  | In IT $\frac{\text { 矿 }}{\text { w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敬0 } \\ & \text { 姃 } \end{aligned}$ |  |  |  |


|  |  | 唐比 <br> 군（く <br> 保证 <br> lloter <br> 比にあ |  | X | $\bigcirc$ | x |  <br>  <br>  <br>  <br>  <br>  | ${ }^{2} 10$ |  | $\begin{aligned} & \text { 호함 } 1 t_{1}^{\prime} \\ & \text { 나나 } \\ & \text { 안운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品唐 <br> 吉石 <br> ㄴㅡㅡㄴ <br> 前 <br> 格品） <br> © | X |  | X | X | $\bigcirc$ | X |  <br>  <br>  <br>  <br>  <br>  <br>  | 京长 |  <br> ＇62＇s <br> ＇$\underbrace{}_{002}$ |  | $\begin{aligned} & \text { 爰 } \\ & \text { 品\|y } \\ & \text { 品品\|y } \end{aligned}$ | 晶굴（品を |
| x | 홍강 1 客 <br> 6展比路 <br> 奴莤 前因呂民百渦立定品于 |  <br> 궅 16 <br> 以妓 <br> 芸 <br> 民家 <br> 飞百 <br> 估立定 <br> 品テ |  | X | © | x |  <br>  <br>  <br>  <br>  <br>  <br>  <br>  | 退成估 |  |  | 品吅\＞ | 晶궅 <br> 以辰吕炎信 <br> 飞百 <br> 종ㅁㅁ문 <br> 品于 |
| 应届 | 윽흐공닝 | 屁年 <br> 느인 | ｜ICC군「허답키 | 1号届 <br> 융 | 읖ㅍ 古雇 | 䎏 굼\|< |  | $\begin{aligned} & \\| x \frac{1}{x} \\ & \text { foll\|l\|} \end{aligned}$ | ｜Ciyforly | $\begin{aligned} & \text { 䜀咅 } \\ & \text { 层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읍 } \\ & \text { \|하응 } \end{aligned}$ | 品品㫛 |

［부록 1］

| 짇 现 |  | $\star$ | $\star$ |
| :---: | :---: | :---: | :---: |
|  |  |  |  |
| $\frac{10 \mathrm{ONF}}{\bar{N}}$ |  |  |  |
|  |  |  |  |
| $\frac{0: 10}{\mathrm{O} \Gamma} \frac{\text { 아 }}{\mathrm{K}}$ |  | $\star$ | x |
| $\begin{aligned} & \text { 마춫 } \\ & \text { 就 } \end{aligned}$ |  | $\bigcirc$ | $\bigcirc$ |
|  |  | © | $\star$ |
|  |  | 盛巩示叫析 $\sqrt{\text { T0 }}$ <br>  <br>  <br>  <br>  <br>  <br>  |  |
| 㹁 |  | $\frac{\square}{0}$ |  |
| $\begin{aligned} & \frac{\bar{n}}{\frac{\lambda}{\alpha}} \\ & \frac{k 0}{\bar{K}} \end{aligned}$ |  |  | $\stackrel{\infty}{\circ} \dot{d i}$ |
| 郎趡 |  |  |  |
|  |  | $\begin{aligned} & \text { on } \\ & \gamma_{X} \end{aligned}$ |  |
| $\begin{aligned} & \text { 敬 } \\ & \text { 解 } \end{aligned}$ |  |  |  |


| 기본법의 규성방식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령명 | 하위 법령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begin{aligned} & \text { 제안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기본 } \\ & \text { 이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책무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적용 } \\ & \text { 범위 } \end{aligned}$ | 타법과의 <br> 관계 | $\begin{aligned} & \text { 계획 } \\ & \text { 수립 } \end{aligned}$ | 위원회등 | 벌 칙 |
| $\begin{aligned} & \text { 양성 } \\ & \text { 평등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begin{aligned} & \text { 여성 } \\ & \text { 가족부 } \end{aligned}$ | $\begin{gathered} 2014 . \\ 5.28 . \\ \text { 전부개정 } \\ (1995 . \\ 12.30 . \\ \text { 제정 } \\ \text { 여성 발전 } \\ \text { 기본법) } \end{gathered}$ | $\begin{aligned} & \text { 위원장 } \\ & \text { (위원장) } \end{aligned}$ |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 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 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함 | © | © | X | 타법 제•개 정시 이 법 목적과 기본 이념 준수 | $\begin{aligned} & \text { 양성 } \\ & \text { 평등 } \\ & \text { 정책 } \\ & \text { 기본 } \\ & \text { 계획 } \end{aligned}$ | 앙성평등 <br> 위원회 | X |
| $\begin{aligned} & \text { 영상 } \\ & \text { 진흥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 문화 <br> 체육 <br> 관광부 | $\begin{aligned} & \text { 1995.1.5.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정부 |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 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 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 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 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에 이바지함 | X | © | X | 타법규정 없 는 한 이 법 적용 | X | X | X |
| 인적 <br> 자원 <br> 개발 <br> 기본법 | 시행령 | 교육부 | $\begin{aligned} & 2002 . \\ & 8.26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정부 |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 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 쟁력강화에 이바지함 | X | $\bigcirc$ | X | 타법 우선적용 | 인적 <br> 자원 <br> 개발 <br> 기본 <br> 계획 | 제7조 <br> （국가인적 <br> 자원 <br> 위원회） | X |

[부록 1]

| 법령명 | $\begin{aligned} & \text { 하위 } \\ & \text { 법령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begin{aligned} & \text { 제안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기본 } \\ & \text { 이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책무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적용 } \\ & \text { 범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타법과의 } \\ & \text { 관계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계획 } \\ & \text { 수립 } \end{aligned}$ | 위원회등 | 벌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기본법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begin{aligned} & \text { 교육부, } \\ & \text { 고용 } \\ & \text { 노동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1997 . \\ & 3.27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정부 |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 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 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 회의 구현에 이바지함 | X | O | X | X | 자격 <br> 관리 • <br> 운영 <br> 기본 <br> 계획 | $\begin{aligned} & \text { 자격 } \\ & \text { 정책 } \\ & \text { 심의회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 } \\ \text { (행위 } \\ \text { 및 } \\ \text { 금지 } \\ \text { 의무 } \\ \text { 위반) } \end{gathered}$ |
| 자원 <br> 봉사 <br> 활동 <br> 기본법 | 시행령 | $\begin{aligned} & \text { 행정 } \\ & \text { 자치부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2005.8.4.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위원장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할 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 설에 이바지함 | © | © | X | $\begin{aligned} & \text { 타법규정 없 } \\ & \text { 는 한 이 법 } \\ & \text { 준수 } \end{aligned}$ | $\begin{aligned} & \hline \text { 자원 } \\ & \text { 봉사 } \\ & \text { 활동의 } \\ & \text { 진흥에 } \\ & \text { 관한 } \\ & \text { 국가 } \\ & \text { 기본 } \\ & \text { 계획 } \\ & \hline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자원봉사 } \\ & \text { 진흥 } \\ & \text { 위원회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 } \\ & \text { (금지 } \\ & \text { 의무 } \\ & \text { 위반) } \end{aligned}$ |
| 재난 및 <br> 안전관리 <br> 기본법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begin{aligned} & \text { 국민 } \\ & \text { 안전처 } \end{aligned}$ | $\begin{aligned} & 2004 . \\ & 3.11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정부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 대응 - 복구와 안전문화활 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bigcirc$ | © | X | (1)타법 제• 개정시 이 법 목적과 기본 이념 부합 (2) 타법규정 없는 한 이 법 준수 | $\begin{aligned} & \text { 국가 } \\ & \text { 안전 } \\ & \text { 관리 } \\ & \text { 기본 } \\ & \text { 계횓 } \\ & \text { 등 } \end{aligned}$ | 중앙 <br> 안전관리 <br> 위원회 <br> 등 | $\begin{gathered} \text { © } \\ \text { (행위 } \\ \text { 및 } \\ \text { 금지 } \\ \text { 의무 } \\ \text { 위반) } \end{gathered}$ |


| $\begin{aligned} & \text { 俗 } \\ & \text { 岍 } \end{aligned}$ | $\chi$ | $\chi$ | $x$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frac{0}{\frac{1}{7}}= \\ & \frac{\overline{1} 11}{\bar{\omega}} \end{aligned}$ |  |  |  |
|  | $x$ | $x$ | $x$ |
|  | © | $\bigcirc$ | $\bigcirc$ |
| $\frac{\text { 퍼 }}{n} \frac{\text { 硘 }}{0}$ | $x$ | （ | （ ） |
|  |  |  |  |
| $\frac{\stackrel{\rightharpoonup}{\circ}}{\bar{K}} \stackrel{\bar{k}}{\text { Kł }}$ | $\frac{\text { Iㅏ }}{\mathbb{N}^{0}}$ | $\begin{aligned} & \frac{\dot{x}^{0}}{0} \\ & \frac{\text { of }}{\text { of }} \end{aligned}$ |  |
| $\begin{aligned} & \bar{\lambda} \\ & \frac{\alpha}{\alpha} \\ & \frac{k}{\bar{K}} \end{aligned}$ |  |  | $\stackrel{\dot{\sim}}{\stackrel{\sim}{\sim}} \stackrel{\dot{x}}{=} \frac{x^{0}}{\bar{x}}$ |
| 市」㔻 | $\begin{aligned} & \text { 파 } \\ & \text { 마 } \\ & \text { 伊 } \end{aligned}$ | N年矿 |  |
|  |  |  |  |
| $\begin{aligned} & \text { 敬 } \\ & \text { 剞 } \end{aligned}$ |  |  |  |

[부록 1]

| 법령명 | 하위 법령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begin{aligned} & \text { 제안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제정목적 | 기본닌 | $\begin{aligned} & \text { 책무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적용 } \\ & \text { 범위 } \end{aligned}$ | 타법과의 <br> 관계 | 계획 <br> 수립 | 위원회등 | 벌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 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 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 |  |  |  | (3) 행 정 계 획 과정책은 이 법의 기본원 칙 부합 |  |  |  |
| $\begin{aligned} & \text { 전기 } \\ & \text { 통신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 $\begin{aligned} & \text { 미래 } \\ & \text { 창조 } \\ & \text { 과학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1983 . \\ & 12.30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정부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 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 X | X | X | X | 전기 <br> 통신 <br> 기본 <br> 계획 | X | $\begin{gathered} \text { © } \\ \text { (행위 } \\ \text { 위반) } \end{gathered}$ |
| $\begin{aligned} & \text { 전자 } \\ & \text { 문서 및 } \\ & \text { 전자 } \\ & \text { 거래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미래 <br> 창조 <br> 과학부, <br> 법무부 | $\begin{gathered} \text { 1999.2.8.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위원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 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X | © | © | X | $\begin{gathered} \hline \text { 전자 } \\ \text { 문서 } \\ \text { 전자 } \\ \text { 거래 } \\ \text { 촉진 } \\ \text { 계획 } \end{gathered}$ | $\begin{gathered} \hline \text { 전자 } \\ \text { 문서 } \cdot \\ \text { 전자 } \\ \text { 거래 } \\ \text { 분쟁조정 } \\ \text { 위원회 } \end{gathered}$ | $\begin{gathered} \hline \text { © } \\ \text { (행위 } \\ \text { 및 } \\ \text { 금지 } \\ \text { 의무 } \\ \text { 위반) } \end{gathered}$ |
| 정부 <br> 업무 <br> 평가 <br> 기본법 | 시행령 | $\begin{aligned} & \text { 국무 } \\ & \text { 조정실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2001.1.8.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정부 |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의 통 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 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 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킴 | X | © | X | X | 정부 <br> 업무 <br> 평가 <br> 기본 <br> 계획 | 정부 <br> 업무 <br> 평가 <br> 위원회 | X |


| X | X |  | X | © | © | X | 艮以展届 1 比葸 <br>  <br>  <br> 琉后里 <br>  <br>  | ${ }^{1} 10$ |  | $\begin{aligned} & \text { 民昆\| } \\ & \text { 于号 } \end{aligned}$ | 운으이 $1 \times$ | $\begin{aligned} & \text { 昆굴\|< } \\ & \text { 昆ㄴ } \\ & \text { 干옻 } \end{aligne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r> 是운 <br> 比立 |  | X | © | © |  <br>  <br>  <br>  <br>  | 这居倞 | 昆 410 <br> 은 <br> モどてા <br> －sioz <br> \＆ <br> ＇2て＇9 <br> －sioz | $\begin{aligned} & \text { 느울ㄸ } \\ & \text { 可논 } \end{aligned}$ | 믕 㓉 | $\begin{gathered} \text { 昆굵 } \mid<~ \\ t_{1} \frac{1}{2} \end{gathered}$ |
|  | X |  |  | X | © | © |  <br>  <br>  <br>  <br>  <br>  | ${ }^{1} 10$ |  |  | 웂이니 |  |
| 兴届 | 윽흐궁｜하 | 㢄 층｜ㄷ | ｜FCFTV <br>  | 1生届 융 | $\begin{aligned} & \text { Io } \overline{\underline{x}} \\ & \text { 立 } \end{aligned}$ | 䎏 10 <br> 굼ㄷ |  | $\begin{aligned} & \\| \underline{x} \frac{1}{x} \\ & \text { follyy} \end{aligned}$ | ｜C｜yefly |  | $\begin{aligned} & \text { 을届 } \\ & \text { \|너응 } \end{aligned}$ | 品品㫛 |

[부록 1]

| 법령명 | 하위 법령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begin{aligned} & \text { 제안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제정목적 | $\begin{aligned} & \text { 기본 } \\ & \text { 이념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책무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적용 } \\ & \text { 범위 } \end{aligned}$ | 타법과의 <br> 관계 | $\begin{aligned} & \text { 계획 } \\ & \text { 수립 } \end{aligned}$ | 위원회등 | 벌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세 기본법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begin{aligned} & \text { 행정 } \\ & \text { 자치부 } \end{aligned}$ | $\begin{aligned} & 2010 . \\ & 3.31 . \\ & \text { 제정 } \end{aligned}$ | 정부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또는 부항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 정항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 에 기여함 | X | X | X | X | 지방세 <br> 수납 <br> 정보 <br> 시스템 <br> 운영 <br> 계획 | X | X |
| 지방자치 <br> 단체기금 <br> 관리 <br> 기본법 | 시행령 | $\begin{aligned} & \text { 행정 } \\ & \text { 자치부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2005.8.4.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정부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 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 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 지함 | X | X | X | X | $\begin{aligned} & \text { 기금 } \\ & \text { 운용 } \\ & \text { 계획 } \end{aligned}$ | 기금운용 <br> 심의 <br> 위원회 | X |
| 지속 가능 <br> 발전법 | 시행령 | 환경부 | $\begin{gathered} \text { 2007.8.3.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정부 |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 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X | © | X | X | X | $\begin{aligned} & \text { 지속가능 } \\ & \text { 발전 } \\ & \text { 위원회 } \end{aligned}$ | X |


| 기본법의 규성방식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령명 | 하위 <br> 법령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begin{aligned} & \text { 제안 } \\ & \text { 주체 } \end{aligned}$ | 제정목적 | 기본 이념 | 책무 <br> 조항 | $\begin{aligned} & \text { 적용 } \\ & \text { 범위 } \end{aligned}$ | 타법과의 관계 | 계획 <br> 수립 | 위원회등 | 벌 칙 |
| 지식재산 <br> 기본법 | 시행령 | 미래 <br> 창조 과학부 | 2011.5.19. <br> 제정 | 위원장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 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 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 | ( ) | X | (1)타법 제• 개정시 이 법 의 목적과 기 본이념 부합 (2) 타 법규정 없는 한 이 법 준수 | 국가 <br> 지식 <br> 재산 <br> 기본 <br> 계획 <br> 등 | 국가지식 <br> 재산 <br> 위원회 | X |
| 진실 • <br> 화해를 <br> 위한 <br> 과거사 <br> 정리 <br> 기본법 | 시행령 | 행정 자치부 | 2005.5.31. <br> 제정 | 의원 |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 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사건 등을 조 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 민통합에 기여함 | X | ( ) | X | X | X | 진실 • <br> 화해를 <br> 위한 <br> 과거사 <br> 정리 <br> 위원회 | © <br> (행위 <br> 및 <br> 금지 <br> 의무 <br> 위반) |
| 질서 <br> 위반 <br> 행위 <br> 규제법 | 시행령 | 법무부 | 2007. <br> 12.21 . <br> 제정 | 위원장 |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 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 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X | X | © | 과태료 관련 <br> 이법에 저촉 <br> 되는 것은 이 <br> 법 우선적용 | X | X | X |

[부록 1]

| 법령명 | 하위 <br> 법령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제정시기 | 제안 <br> 주체 | 제정목적 | 기본 <br> 이념 | $\begin{aligned} & \text { 책무 } \\ & \text { 조항 } \end{aligned}$ | 적용 범위 | 타법과의 <br> 관계 | 계획 수립 | 위원회등 | 벌 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철도 } \\ \text { 산업 } \\ \text { 발전 } \\ \text { 기본법 } \end{gather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국토 교통부 | $\begin{gathered} \text { 2003.7.29. } \\ \text { 제정 } \end{gathered}$ | 의원 |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 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 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 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X | ( ) | © | X | 철도 <br> 산업 <br> 발전 <br> 기본 <br> 계획의 <br> 수립 | 철도 <br> 산업 <br> 위원회 | © <br> (행위 <br> 의무 <br> 위반) |
| $\begin{aligned} & \text { 청소년 } \\ & \text { 기본법 } \end{align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begin{aligned} & \text { 여성 } \\ & \text { 가족부 } \end{aligned}$ | 1991. <br> 12.31. <br> 제정 | 정부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 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 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 | ( $)$ | ( ) | X | (1) 청 소 년육 성에 관하여 타법보다 우 선적용 <br> (2) 청 소 년육 성 관련법률 제 - 개 정 시 이법 취지 준수 | 청소년 <br> 육성에 <br> 관한 <br> 기본 <br> 계획 | 청소년 <br> 정책 <br> 위원회 <br> 등 | $\begin{gathered} \text { © } \\ \text { (행위 } \\ \text { 및 } \\ \text { 금지 } \\ \text { 의무 } \\ \text { 위반) } \end{gathered}$ |
| $\begin{gathered} \text { 토지 } \\ \text { 이용 } \\ \text { 규제 } \\ \text { 기본법 } \end{gathered}$ | 시행령, <br> 시행 <br> 규칙 | $\begin{gathered} \text { 국토 } \\ \text { 교통부 } \end{gathered}$ | 2005.12.7 <br> 제정 | 정부 |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 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X | X | X | 타법규정 없 은 한 이 법 준수 | X | 토지이용 <br> 규제 <br> 심의 <br> 위원회 | X |


| $\begin{aligned} & \text { 衣「 } \\ & \text { 岍 } \end{aligned}$ | $\chi$ | $x$ | $x$ |
| :---: | :---: | :---: | :---: |
|  |  |  | $x$ |
|  |  |  |  |
| $\begin{aligned} & \text { 이 } \\ & \frac{1}{\Gamma-1} \\ & \frac{\overline{11}}{\bar{\omega}} \end{aligned}$ |  | $x$ | $x$ |
|  | $x$ |  |  |
|  | © | $\bigcirc$ | $x$ |
| $\frac{\text { 께 }}{n} \frac{\text { 硘 }}{0}$ | © | $x$ | （ ） |
|  |  |  | 雨 0 雨 매 lof 퍼 <br>  <br>  <br>  <br>  <br>  K <br>  <br>  |
| $\begin{aligned} & \text { 打 } \\ & \left.\frac{\text { k }}{\bar{\Gamma}} \mathrm{K} \right\rvert\, \end{aligned}$ | $\frac{\text { 파 }}{\mathbb{K}^{0}}$ | $\underset{\mathbb{x}^{2}}{\substack{0}}$ | $\frac{\text { 파 }}{\frac{1}{\mathbb{K}}}$ |
| $\begin{aligned} & \frac{\Gamma}{হ} \\ & \frac{\bar{K}}{\bar{K}} \end{aligned}$ |  |  | $\begin{aligned} & \stackrel{\rightharpoonup}{n} \\ & \stackrel{x}{n} \\ & \stackrel{x}{x} \\ & \underset{\sim}{x}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水甭 } \end{aligned}$ | \％ |  |  |
| $\frac{\overline{\mathrm{F}}}{10} \frac{\text { 敬 }}{10}$ |  |  |  |
| $\begin{aligned} & \text { स्0 } \\ & \text { 敬0 } \\ & \text { 伍 } \end{aligned}$ |  |  |  |

［부록 1］

| $\begin{aligned} & \text { 衣「 } \\ & \text { 岍 } \end{aligned}$ |  | $x$ |
| :---: | :---: | :---: |
|  |  |  |
|  |  |  <br>  |
|  |  | $x$ |
| $\begin{aligned} & \text { Oㅕ0 } \overline{\text { or }} \\ & \text { KT } \end{aligned}$ | $x$ | $x$ |
|  | $\chi$ | © |
| $\frac{\text { 꺽 }}{\text { 䂙 }}$ | © | © |
|  |  |  |
|  |  | $\underset{\mathbb{N}^{2}}{\substack{- \\ \hline}}$ |
| $\frac{\bar{\Lambda}}{\frac{\square}{K}}$ |  | $\dot{\circ}$ $\dot{\infty}$ $\dot{\circ}$ $\dot{\sigma}$ |
| 宊要 |  | $\begin{aligned} & \text { Iㅏ } \\ & \text { [10 } \\ & \text { wion } \end{aligned}$ |
| $\frac{\bar{\circ}}{\frac{1}{10}} \frac{\text { 敬 }}{1}$ |  |  |
| $\begin{aligned} & \text { 敬 } \\ & \text { 形 } \end{aligned}$ |  |  |


|  | 관련법률 | 인증등의 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1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br> 인정에 관한 규정 | 신기술 | 식품의약품안전처 |
| 3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형식승인 | 안전 | 국토교통부 |
| 4 | 건축법 | 벽체차음 구조 인정 | 품질 | 국토교통ㅂ |
| 5 | 건축법 | 내화구조 인정 | 안전 | 국토교통ㅂ |
| 6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기 형식승인. 검정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 안전 | 산업통상자원부 |
| 8 | 공연법 | 무대시설안전진단 | 안전 | 문화체육관광부 |
| 9 | 관광진흥법 | 유기 시설,기구의 안전성 검사 | 안전 | 문화체육관광부 |
| 10 | 관광진흥법 | 가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
| 11 | 광산보안법 |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 안전 | 산업통상자원부 |
| 12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 재해 예방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 품질 | 국민안전처 |
| 13 | 기상관측표준화법 | 기상측기의 검정 | 품질 | 기상청 |
| 14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농업기계의 검정 | 안전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법률상 법정의무인증 현황

|  | 관련법률 | 인증등의 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3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용품형식승인 | 안전 | 국민안전처 |
| 32 | 소음 - 진동관리법 | 소음도 검사 | 환경 | 환경부 |
| 33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 환경 | 환경부 |
| 34 | 수도법수도법 | 위생안전기준인증 | 안전 | 환경부 |
| 35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검사 | 안전 | 행정자치부 |
| 36 | 식품위생법 | 식품 HACCP | 안전 | 식품의약품안전처 |
| 3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가스용품검사 | 안전 | 산업통상자원부 |
| 3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3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 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 4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열사용기자재검사 | 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 4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 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 42 | 위험물안전관리법 | 탱크안전성능검사 | 안전 | 국민안전처 |
| 43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허가 | 안전 | 식품의약품안전처 |
| 44 | 인삼산업법 | 인삼류 검사 | 안전 | 농림축산식품부 |
| 45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 품질 | 산림청 |
| 46 | 자동차관리법 |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 안전 | 국토교통부 |
| 47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 안전 | 국토교통부 |
| 48 | 자동차관리법 | 택시미터의 검정 | 시스템 | 국토교통부 |

[부록 2]

|  | 관련법률 | 인증등의 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4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 등급 인증 | 환경 | 환경부 |
| 50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전기용품(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확인) | 안전 | 산업통상자원부 |
| 51 | 전파법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 품질 | 미래창조과학부 |
| 5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 인터넷 | 미래창조과학부 |
| 53 | 주차장법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 안전 | 국토교통부 |
| 54 | 주택법 |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 품질 | 국토교통부 |
| 55 | 주택법 | 장수명주택 인증 | 품질 | 국토교통부 |
| 56 | 철도안전법 | 철도차량형식승인 | 품질 | 국토교통부 |
| 57 | 철도안전법 | 철도용품형식승인 | 품질 | 국토교통부 |
| 58 |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HACCP | 안전 | 식품 의약품안전처 |
| 59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측량기기의 검사 | 품질 | 국토교통부 |
| 60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공산품(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 품질표시) | 안전 | 산업통상자원부 |
| 61 | 하수도법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 환경 | 환경부 |
| 62 | 하천법 |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 품질 | 국토교통부 |
| 63 | 항공법 | 감항증명 | 품질 | 국토교통부 |



|  | 관련법률 | 인증등의 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64 | 항공법 | 항공기 형식증명 | 안전 |  |
| 65 | 항공법 | 국토교통부 |  |  |
| 66 | 항공법 |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인증 | 안전 | 국토교통부 |
| 67 | 정비조직인증 | 품질 | 국토교통부 |  |
| 68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항만법 | 항공우주 분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 품질 |
| 69 | 해사안전법 |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 산업통상자원부 |  |
| 70 | 해양환경관리법 |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 | 전 | 안전 |
| 71 | 해양환경관리번부 | 해양수산부 |  |  |
| 72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 품질 | 해양수산부 |
| 73 | 환경분야 시험 $\cdot$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 환경 | 국민안전처 |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1 | 에너지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 2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인증제도 | 기타 | 여성가족부 |
| 3 | 가축전염병예방법 | 위생 - 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 | 보건 | 농림축산식품부 |
| 4 | 가축전염병예방법 | 위생 - 방역관리 우수종돈장인증 | 보건 | 농림축산식품부 |
| 5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 인증(PIPL) | $\begin{gathered} \hline \text { 소프트웨어/ } \\ \text { 인터넷 } \end{gathered}$ | 행정자치부 |
| 6 | 건설기술관리법 |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 품 질 | 국토교통부 |
| 7 | 건설기술관리법 | 신기술인증(NET마크) | 신기술 | 국토교통부 |
| 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품질인증 | 환경 | 국토교통부 |
| 9 | 건축법 | 지능형건축물인증 | 품질 | 국토교통부 |
| 10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 기타 | 보건복지부 |
| 11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 고령친화 우수제품 | 기타 | 보건복지부 |
| 12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 품질인증 | 품 질 | 국토교통부 |
| 13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시스템 | 공정거래위원회 |
| 14 | 관광진흥 법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인증 |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
| 15 | 관세 법 | AEO 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기타 | 관세청 |

[부록 3]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1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국토부-복지부 공동) | 기타 | 국토교통ㅂ |
| 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 기타 | 미래창조과학부 |
| 18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정보보호시스템평가 - 인증(CC 인증) | 소프트웨어/ <br> 인터넷 | 미래창조과학부 |
| 19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웹접근성품질인증 | $\begin{gathered} \text { 소프트웨어/ } \\ \text { 인터넷 } \end{gathered}$ | 미래창조과학부 |
| 20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그린인터넷인증 | $\begin{gathered} \text { 소프트웨어/ } \\ \text { 인터넷 } \end{gathered}$ | 미래창조과학부 |
| 21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지능형교통체계 인증 <br>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 | 품질 | 국토교통부 |
| 22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신기술인증 | 신기술 | 국토교통부 |
| 23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 기타 | 고용노동부 |
| 24 | 기상법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 기타 | 기상청 |
| 25 | 기상산업진흥법 | 날씨경영인증 | 시스템 | 기상청 |
| 26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인증 | 환경 | 국토교통ㅂ |
| 27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 | 국토교통부 |
| 28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림식품 신기술 | 신기술 | 농림축산식품부 |
| 29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 30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
| 3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 지리적표시 | 품질 | 해양수산부 |
| 32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 • 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33 |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 34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수산물품질인증 | 품질 | 해양수산부 |
| 35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신기술농업기계지정 | 신기술 | 농림춧산식품부 |
| 36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 품질 | 국토교통부 |
| 37 | 도시철도법 | (폐지)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 품질 | 국토교토우 |
| 38 |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 39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 기타 | 산림청 |
| 40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 기타 | 산림청 |
| 4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제품품질 인증 | 품질 | 산림청 |
| 42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 기타 | 산림청 |
| 4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 기타 | 산림청 |
| 4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제품신기술 지정 | 신기술 | 산림청 |
| 4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상품 품질인증 |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
| 46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DQC) | 품질 | 미래창조과학부 |
| 47 | 문화예술진흥법 |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
| 48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 | 서비스/디자인 | 국토교통부 |
| 49 | 물류정책기본법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환경 | 국토교토우 |
| 50 | 물류정책기본법 | 종합물류기업인증 | 서비스/디자인 | 국토교토우 |
| 51 | 물류정책기본법 |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 품질 | 국토교통부 |
| 52 | 방위사업법 | 국방마크( DQ 마크)인증제도 | 품질 | 방위사업청 |
| 53 | 방위사업법 | 국방품질 경영시스템인증 | 시스템 | 방위사업청 |
| 54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신기술인증(NET마크) | 신기술 | 보건복지부 |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55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민간전환) 신뢰성인증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56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 기타 | 고용노동부 |
| 57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 기타 | 산림청 |
| 5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신기술인증(NET마크) | 신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
| 59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신제품인증(NEP마크) | 신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
| 60 | 산업발전법 | 생산성경영체제인증 | 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 |
| 61 | 산업안전보건법 | S 마크인증 | 안전 | 고용노동부 |
| 62 | 산업융합 촉진법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신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
| 63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금속탱크공업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64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도료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65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공기청정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66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금속울타리용철물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67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상하수도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68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석재공업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69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미끄럼방지포장재)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0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금속공업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1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공기살균기)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2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석회석가공업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3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설비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4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퍼걸러)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5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세라믹타일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76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아스콘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7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플라스틱제조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8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화장실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79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활성탄소공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0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어린이놀이시설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1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어업용LED등기구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2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조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3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콘크리트공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4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흙콘크리트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5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철망공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6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전지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7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판유리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8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자동판매기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89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PC콘크리트암거공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90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점토바닥벽돌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91 | 산업표준화법 | 한국산업표시인증(KS마크) | 서비스/디자인 | 산업통상자원부 |
| 92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PVC관공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93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가구산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94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전기공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95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전선공업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96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주물공업분야)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 97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가정용싱크대)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부록 3]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98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고령친화용품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99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조리기계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100 | 산업표준화법 | 단체표준인증(조명공업분야)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101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
| 102 | 소금산업 진흥법 | 우수천일염인증 | 품질 | 해양수산부 |
| 103 | 소금산업 진흥법 | 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 품질 | 해양수산부 |
| 104 | 소금산업 진흥법 | 친환경천일염 인증 | 품질 | 해양수산부 |
| 10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 품질 | 국민안전처 |
| 106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인증 | 품질 | 국민안전처 |
| 107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
| 10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 질인증(SP) | 소프트웨어/ <br> 인터넷 | 미래창조과학부 |
| 109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품질(GS)인증 | 소프트웨어/ <br> 인터넷 | 미래창조과학부 |
| 110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 기타 | 산림청 |
| 111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 - 검정 | 안전 | 국민안전처 |
| 112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 기타 | 국민안전처 |
| 113 | 식품산업진흥법 | 전통식품 품질인증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 114 | 식품산업진흥법 | 수산특산물품질인증 | 품질 | 해양수산부 |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115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명인 | 품질 | 해양수산부 |
| 116 | 식품산업진흥법 | 전통식품 | 품질 | 해양수산부 |
| 11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br>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폐지)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 | 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 11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br>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통합)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 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 11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 건강 친화기업 지정 | 안전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 품질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21 | 어선법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 안전 | 해양수산부 |
| 122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평가인증 | 기타 | 보건복지부 |
| 123 | 유통산업발전법 | 물류표준설비인증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124 | 의료법 | 의료기관 인증 | 기타 | 보건복지부 |
| 125 | 이러낭(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지) 이러닝 품질인증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126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기타 | 교육부 |
| 12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인증 | 기타 | 산림청 |
| 128 | 자연재해대책법 | 방재신기술 | 신기술 | 국민안전처 |
| 12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130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생산품 인증 | 기타 | 보건복지부 |
| 13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 | 환경 | 산업통상자원부 |

[부록 3]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132 | 전력기술관리법 | 전력신기술지정 | 신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
| 13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우수전자거래 사업자인증(eTrust인증) | 소프트웨어/ <br> 인터넷 | 미래창조과학부 |
| 134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 | 품질 | 미래창조과학부 |
| 135 | 전자정부법 | 행정업무용 소프틍ᅰᅰ어 선정 | 소프트웨어/ <br> 인터넷 | 행정자치부 |
| 136 | 전자정부법 | (통합)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G-ISMS) | 보건 | 미래창조과학부 |
| 13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술품질인증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 138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 ICT융합품질인증 | 품질 | 미래창조과학부 |
| 13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PIMS) | 소프트웨어/ <br> 인터넷 | 방송통신위원회 |
| 140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 기타 | 보건복지부 |
| 141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싱글PPM품질인증 | 품질 | 중소기업청 |
| 14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 법률 | 성능인증 | 품질 | 중소기업청 |
| 143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지능형로봇품질인증 | 품질 | 산업통상자원부 |
| 144 | 철도안전법 | (폐지) 철도용품품질인증 | 품질 | 국토교통부 |
| 145 |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 기타 | 여성가족부 |
| 146 | 축산법 | 토종가축의 인정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147 | 축산법 | 가축의 검정 | 품 질 | 농림축산식품부 |
| 148 | 축산법 | 우수 종축업체 인증 | 품 질 | 농림축산식품부 |
| 149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무항생제수산물 | 품질 | 해양수산부 |
| 150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활성처리제비사용 | 품질 | 해양수산부 |
| 15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기가공식품인증 | 품질 | 농림축산식품부 |
| 15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기수산물 | 품 질 | 해양수산부 |
| 15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기가공식품 | 품 질 | 해양수산부 |
| 154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 품 질 | 농림축산식품부 |
| 15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 품 질 | 농촌진흥청 |
| 156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 $\begin{gathered} \hline \text { 소프트웨어/ } \\ \text { 인터넷 } \\ \hline \end{gathered}$ | 미래창조과학부 |
| 157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 $\begin{gathered} \hline \text { 소프트웨어/ } \\ \text { 인터넷 } \end{gathered}$ | 미래창조과학부 |


|  | 관련법률 | 인증대상 | 분 야 | 소관부처 |
| :---: | :---: | :---: | :---: | :---: |
| 158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산림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 환경 | 산림청 |
| 159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산림탄소흡수량인증 | 환경 | 산림청 |
| 160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품질경 영체제인증(ISO9001) | 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 |
| 161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민간전환) 서비스품 질우수기업인증 | 서비스/디자인 | 산업통상자원부 |
| 162 | 항로표지법 | 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검사 | 품질 | 해양수산부 |
| 163 | 해양환경관리법 | 측정분석능력인증 | 기타 | 해양수산부 |
| 164 | 해양환경관리법 | (폐지)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 | 품 질 | 국민안전처 |
| 165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 | 환경 | 해양수산부 |
| 166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 서비스/디자인 | 국토교통부 |
| 16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우수화물정보망인증 | 소프트웨어/ <br> 인터넷 | 국토교통부 |
| 168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 | 환경 | 환경부 |
| 16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 신기술 | 환경부 |
| 17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표지제도 | 환경 | 환경부 |
| 17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탄소성적표지제도 | 환경 | 환경부 |
| 17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성적표지인증 | 환경 | 환경부 |
| 173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1) | 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 |
| 174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경영시스템인증 | 환경 | 산업통상자원부 |
| 175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재제조제품품질인증(REMAN마크) | 품 질 | 산업통상자원부 |


[^0]:    1）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제151호），2014．1．13．，6면．
    2）디지털 타임즈（2014．12．9．），사설－시험인증시장 외국계 침식，보고만 있을텐가（http：／／ www．dt．co．kr／contents．html？article＿no＝2014120902102351660001，2015－11－11 최종방문）．

[^1]:    7) 강현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 입법평가 일반론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3.10, 43면.
[^2]:    11) 특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과 원칙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강현철•한귀현,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지역개 발 관련 특별법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3.9. 참고.
[^3]:    12）기본법의 제정연혁을 보더라도 법제정당시부터＇기본법＇의 명칭을 가지고 해당정 책 분야의 기본법 지위를 유지하였던 법률（「중소기업기본법」（1966．12．06．），「행정조 사기본법」（2007．05．17．），새로운 정책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1．13．）이 있다．기본법 입법의 증가와 함께 개별법만 있었던 분야에 이를 종합하는 기본법을 신규로 제정한 경우（「건축기본법」（2007．12．31．）도 있으며，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기본법으로 변경한 경우「소비자기본법」（2006．9．28．「소비자보 호법」 제명 변경）등 다양하다．한편으로는 종전의 「에너지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이「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에너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

[^4]:    13）기본법의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영도，『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한국법제연 구원，2006．10，24－33면을 참고．
    14）국회 법제실，『법제실무』，2015．1， 8 면．
    15）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2012．12，81면．

[^5]:    16) 물론 기본법이 창고역할을 하는 법률의 성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조항 중 많은 부분이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향 후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연구로 미루고, 여기서 별도의 논의를 하지는 않는다.
[^6]:    것"(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심사보고서, 2002.4, 3 면)으로 보고 하고 있다.

[^7]:    25）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표준기본법」제•개정이유의 내용 중 일부의 내용임．
    26）당시 개정으로 제 30 조의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제 30 조의 3 （한국기 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제 30 조의 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가 2014년 12월 개정으로 해당 연구원의 설립근거를「국가표준기본법」에서 삭제하였다．

[^8]:    29）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2012．12，113－114면；국회 법제실，『법제실무』，2015．1， 257면．
    30）산업자원위원회，국가표준기본법안 검토보고서，1998．12，3－4면．

[^9]:    43）이종영 • 백옥선，＂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중앙법학』 제 15 집 제 2 호，중앙 법학회，2013．6，87면．
    44）이종영－백옥선，＂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중앙법학』 제 15 집 제 2 호，중앙법학회，2013．6，87－88면．
    45）이종영•백옥선，＂독일 인정기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중앙법학』 제 15 집 제 2 호，중앙 법학회，2013．6， 88 면．
    46）강병구，『단일인정기구 출범에 따른 KOLAS 중심의 통합인정제도의 효율화 연구』，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2．8，30면．

[^10]:    품, 공정, 서비스의 시험검사결과와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 이는 협정,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 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 의 용이성 향상의 효과가 있는 협정을 말한다.
    57) 인정된 시험기관, 검사기관, 교정기관 등에 관해서는 http://www.ukas.com/services/ other-services/directory-of-accredited-organisations/(2015-11-10 최종방문) 참조.
    58) http://www.ukas.com/about/our-structure/(2015-11-10 최종방문).
    59) http://www.ukas.com/about/our-structure/(2015-11-10 최종방문).
    60) 이은숙, 국내 적합성 평가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18-19면.
    61) http://www.ukas.com/about/about-accreditation/\#(2015-11-10 최종방문).

[^11]:    68）http：／／www．cnas．org．cn／english／introduction／12／718683．shtml（2015－11－11 최종방문）．
    69）강병구，『단일인정기구 출범에 따른 KOLAS 중심의 통합인정제도의 효율화 연구』，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2012．8，33면．
    70）http：／／www．nite．go．jp／en／iajapan／jnla／outline／index．html（2015－11－11 최종방문）．
    71）http：／／www．nite．go．jp／iajapan／aboutus／ippan／shikenjo．html（2015－11－13 최종방문）．

